

#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별책)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별책)





# CONTENTS

## 법관 강의안 총설

### 제1장

####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 7

|                          |    |
|--------------------------|----|
| I. 개요                    | 9  |
| II. 교육과정의 이해             | 9  |
| 1. 초등학교                  | 9  |
| 2. 중학교                   | 10 |
| 3. 고등학교                  | 11 |
| III. 강의안의 구성             | 12 |
| 1. 강의주제                  | 12 |
| 2. 강의시간                  | 17 |
| IV. 강의의 준비               | 22 |
| 1. 강의안의 숙지               | 22 |
| 2. 학교 교사와의 사전 협의         | 23 |
| 3. 강의 장소 도착 및 예행연습       | 23 |
| V. 강의의 실시                | 23 |
| 1. 리듬감과 집중력 있는 강의를 위한 전략 | 23 |
| 2.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방법         | 26 |
| 3. 질의응답의 대비              | 27 |

## 법관 강의안 I

### 제2장

#### 초등학생을 위한 강의안 29

|                        |    |
|------------------------|----|
| 32-2. 소개합니다            | 31 |
| 32-3. 법                | 33 |
| 32-4. 법원 상징물           | 34 |
| 32-5. 법의 상징물 - 정의의 여신상 | 36 |
| 32-6.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곳    | 38 |
| 32-7. 법의 상징물 2         | 40 |
| 32-8. 법이란              | 43 |

|                       |    |
|-----------------------|----|
| 32-9. 법의 필요성          | 46 |
| 32-10. 법원과 재판         | 49 |
| 32-11. 법원의 역할(삼권분립)   | 50 |
| 32-12. 분쟁해결방법         | 52 |
| 32-13. 재판의 종류         | 55 |
| 32-14. 민사재판의 법정       | 57 |
| 32-15. 형사재판의 법정       | 59 |
| 32-16.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 61 |
| 32-17. 법원에 법망치가 있을까요? | 63 |
| 32-18. 법복             | 65 |
| 32-19. 법원의 종류         | 67 |
| 32-20. 법 상식           | 69 |
| 32-21, 22. 법 상식 1     | 70 |
| 32-23, 24. 법 상식 2     | 72 |
| 32-25, 26. 법 상식 3     | 74 |
| 32-27. 꿈              | 75 |
| 32-28. 자랑스러운 법관       | 76 |
| 32-29. 법원견학, 법원전시관    | 78 |
| 32-30.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80 |
| 32-31. 판사가 되려면        | 82 |
| 32-32. 감사합니다          | 84 |

## 법관 강의안 II

### 제3장

### 중학생을 위한 강의안

85

|                    |     |
|--------------------|-----|
| 33-2. 소개합니다        | 87  |
| 33-3. 법            | 89  |
| 33-4. 법이란          | 90  |
| 33-5.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 92  |
| 33-6. 법의 분류        | 94  |
| 33-7. 재판           | 97  |
| 33-8. 재판과 재판청구권    | 98  |
| 33-9.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100 |
| 33-10. 재판의 종류      | 102 |

|                    |     |
|--------------------|-----|
| 33-11. 민사재판        | 104 |
| 33-12. 민사재판의 절차    | 106 |
| 33-13. 민사재판의 법정    | 108 |
| 33-14. 민사재판부의 유형   | 110 |
| 33-15. 형사재판        | 112 |
| 33-16. 형사재판의 원칙    | 114 |
| 33-17. 형사재판의 절차    | 116 |
| 33-18. 형사재판부의 유형   | 118 |
| 33-19. 국민참여재판      | 120 |
| 33-20. 행정재판과 가사재판  | 122 |
| 33-21. 소년보호재판      | 124 |
| 33-22. 학교폭력 1      | 126 |
| 33-23. 학교폭력 2      | 128 |
| 33-24. 법원          | 130 |
| 33-25. 법원의 역할      | 131 |
| 33-26. 법원의 조직      | 133 |
| 33-27. 대법원         | 135 |
| 33-28.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 137 |
| 33-29. 심급제도        | 139 |
| 33-30. 판사          | 142 |
| 33-31. 자랑스러운 법관    | 143 |
| 33-32.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145 |
| 33-33. 감사합니다       | 147 |

### 법관 강의안 III

## 제 4 장

###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안

149

|                        |     |
|------------------------|-----|
| 39-2, 3. 소개합니다, 재판의 종류 | 151 |
| 39-4. 민사재판             | 154 |
| 39-5. 민사재판             | 155 |
| 39-6. 사례               | 157 |
| 39-7. 소의 제기(소장의 작성)    | 159 |
| 39-8. 소의 제기(소장 제출 법원)  | 161 |
| 39-9. 민사조정 신청          | 163 |

|                       |     |
|-----------------------|-----|
| 39-10. 소송구조           | 165 |
| 39-11. 재판부의 결정        | 167 |
| 39-12. 민사재판의 절차       | 169 |
| 39-13. 답변서의 제출        | 171 |
| 39-14. 민사재판의 법정       | 173 |
| 39-15. 민사재판의 원칙       | 175 |
| 39-16. 판결의 선고         | 178 |
| 39-17. 상소제도           | 181 |
| 39-18. 전자소송           | 183 |
| 39-19. 형사재판           | 185 |
| 39-20. 형사재판           | 186 |
| 39-21. 형사절차           | 188 |
| 39-22. 형사절차의 원칙       | 190 |
| 39-23. 사례             | 192 |
| 39-24. 체포             | 195 |
| 39-25. 피의자의 구속        | 197 |
| 39-26.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 200 |
| 39-27. 공소의 제기(공소장)    | 203 |
| 39-28. 국선변호인 제도       | 205 |
| 39-29. 형사재판부의 유형      | 207 |
| 39-30. 형사재판의 절차       | 209 |
| 39-31, 32. 판결의 선고     | 212 |
| 39-33. 국민참여재판         | 216 |
| 39-34.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18 |
| 39-35. 증인의 의무         | 220 |
| 39-36. 판사의 길          | 222 |
| 39-37.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223 |
| 39-38. 판사가 되는 방법      | 225 |
| 39-39. 감사합니다          | 227 |

|      |     |
|------|-----|
| 참고자료 | 228 |
|------|-----|

|      |     |
|------|-----|
| 사진출처 | 229 |
|------|-----|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법관 강의안 총설

#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

제 1 장





## I. 개 요

이 강의안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의 법교육 강의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법과 관련된 교과서와 법교육 교재를 분석하여 학습내용과 수준을 가늠하고 그에 맞춘 강의안을 마련하였다.

이 강의안은 기본적으로 강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것은 물론 법원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법관의 강의를 실시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교육과정의 이해

### 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1·2학년 과정, 3·4학년 과정, 5·6학년 과정으로 구분된다. 1·2학년 과정에서 법과 관련된 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워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교통안전 규칙이나 도덕과 예절 등의 준수와 실천에 관한 정도여서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규칙을, 4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인터넷 예절,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보다는 도덕과 예절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사회제도나 정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주민자치와 선거,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하는 한편 민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는 차별의 문제와 소수자의 권리보호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5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방법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법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6학년 과정이다. 우선 6학년 도덕 교과서

에서는 법과 규칙의 의미와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는 법원이 하는 일, 법의 필요성, 헌법, 권리와 의무, 인권의 보호, 개인정보의 관리와 저작권의 보호 등을 설명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법과 관련된 분량이 많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더 이상 쉽게 풀이할 수 없는 기관명이나 권리와 의무 등이 아닌 한 법률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은 되어야 효과적인 법관의 강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6학년 과정에서 비로소 나오고 그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강의안을 구분하기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강의의 주제나 소재는 6학년 도덕·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나 설명방식은 4학년이나 5학년 학생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4학년이나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보다 쉽게 강의를 하는 것이 요청된다.

## 2. 중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법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도덕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도덕 교과와 사회 교과는 모두 공통 교과이기는 하지만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와는 달리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 고시에 따른 내용 체계대로 교과서가 집필되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는 도덕 1과 도덕 2로, 사회 교과서는 사회 1과 사회 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학교 3학년 동안 1, 2 교과서를 나눠서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진도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도덕 1 교과서에서는 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폭력의 문제, 사이버 윤리와 예절, 이웃 간 갈등의 해결방법,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설명하면서 과학기술과 도덕 부분에서는 권리와 가치와 충돌과 같은 문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심화한 도덕 2 교과서에서는 표현의 자유, 폭력의 문제,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 준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법과 재판, 법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은 사회 2 교과서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관련하여 법의 필요성과 특성, 법의 역할,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 법의 종류(사법, 공법, 사회법)를,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의 의미와 역할, 재판의 종류,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 등을, 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직과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헌법과 인권, 기본권, 인권 침해와 구제 등도 설명하고 있다. 도덕과 사회 교과서 모두 초등학교에 비해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도여서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 연속적, 단계적으로 학습되지 않는 점과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생용 강의안 또한 학년별로 강의안을 구별하기보다는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의 수준과 내용을 기준으로 강의안을 구성하되, 아직 사회 2 교과서를 배우지 않은 학생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수준을 조절하였다. 실제 강의에서는 미리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진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강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학교 1학년 초반의 학생과 같이 초등학교를 갓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용 강의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법과 직접 관련된 과목은 ‘법과 정치’ 과목이다. 그런데 ‘법과 정치’ 과목은 소위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사회탐구 영역 중 최소 2 과목을 이수하면 되는데, ‘법과 정치’ 과목이 어렵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고 한다.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용 강의안은 ‘법과 정치’ 과목의 선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렇지만, 강의안에는 가급적 ‘법과 정치’ 과목의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법과 정치’ 과목의 내용은 고등학생 단계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정치’ 과목은 과목명과 같이 법과 정치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중 법관의 강의와 관련된 단원은 ‘헌법의 기본 원리’, ‘개인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이다. ‘헌법의 기본 원리’ 단원에서는 헌법의 의미와 입헌주의, 헌법의 정치적 의의와 법적 의의, 우리나라

라 헌법의 특징과 기본 원리,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소개하면서 법원에 관하여 사법권의 독립, 법원의 조직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 비해 범위도 넓어지고 법률용어도 직접 제시하는 등 수준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 과정의 다른 특징으로는 실체법을 다루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인 생활과 법’ 단원에서는 민사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민법의 원칙과 수정원칙, 계약의 의미와 성립조건,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권리구제절차, 출생·혼인·이혼 등의 가족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과 주택 임대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생활법률 중심의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생활과 법’ 단원에서는 형사법과 사회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 형사법에 관한 부분은 범죄와 형벌, 형법과 형벌의 필요성과 기능,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여러 형태, 형벌과 보안처분, 수사단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흐름과 함께 적법절차의 원리나 무죄추정의 원리와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I. 강의안의 구성

#### 1. 강의주제

##### (1) 선정기준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구분하면서,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법원이 하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법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우리 사회의 사법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사법절차와 원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사법제도나 원리에 관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극복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증진하도록 한다.

강의안의 주제는 교과서와 법교육 교재를 분석하면서 착안한 사항과 함께 위와 같은 법교육의 내용과 사법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한정된 강의분량에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중점 분야를 달리하여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 (2) 수준별 강의주제

### (가) 초등학생

초등학생용 강의안은 다음과 같이 법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법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 순 번 | 제 목              | 분 야        | 목표 및 기대효과                |
|-----|------------------|------------|--------------------------|
| 1   | 법, 재판 그리고 꿈      | 제목         |                          |
| 2   | 소개합니다            | 강사 소개      |                          |
| 3   | 법                | 대주제 제시     |                          |
| 4   | 법원 상징물           | 법제도        | 법원에 대한 친근감 형성            |
| 5   | 법의 상징물 - 정의의 여신상 | 법의 원리      | 법에 대한 흥미 부여              |
| 6   |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곳    | 법의 원리, 법제도 | 대법원 소개, 법에 대한 흥미 부여      |
| 7   | 법의 상징물 2         | 법의 원리      |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
| 8   | 법이란              | 법의 원리 및 가치 | 법의 의미 파악                 |
| 9   | 법의 필요성           | 법의 가치      | 법의 필요성 이해<br>긍정적 참여의식 함양 |
| 10  | 법원과 재판           | 대주제 제시     |                          |
| 11  | 법원의 역할(삼권분립)     | 법제도        | 법원의 역할 이해                |
| 12  | 분쟁해결방법           | 법의식        | 합리적 사고능력 증진<br>분쟁해결능력 함양 |
| 13  | 재판의 종류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4  | 민사재판의 법정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순 번    | 제 목            | 분 야      | 목표 및 기대효과                  |
|--------|----------------|----------|----------------------------|
| 15     | 형사재판의 법정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6     |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7     | 법원에 법망치가 있을까요?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8     | 법복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9     | 법원의 종류         | 법제도      | 법원 조직 이해<br>제1심 재판의 중요성 이해 |
| 20     | 법 상식           | 대주제 제시   |                            |
| 21, 22 | 법 상식 1(인터넷 예절) | 법의식, 법지식 | 준법정신, 질서의식 함양              |
| 23, 24 | 법 상식 2(저작권)    | 법의식, 법지식 | 준법정신, 질서의식 함양              |
| 25, 26 | 법 상식 3(학교폭력)   | 법의식, 법지식 | 준법정신, 질서의식 함양              |
| 27     | 꿈              | 대주제 제시   |                            |
| 28     | 자랑스러운 법관       | 법원 인물    | 동기와 성취감 부여, 사법신뢰 증진        |
| 29     | 법원견학, 법원전시관    | 법교육 일반   | 사법신뢰 증진                    |
| 30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법교육 일반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활성화            |
| 31     | 판사가 되려면        | 법교육 일반   | 동기와 성취감 부여, 사법신뢰 증진        |
| 32     | 감사합니다          | 마무리      |                            |

## (나) 중학생

중학생용 강의안은 다음과 같이 법원과 재판 등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 순 번 | 제 목          | 분 야        | 목표 및 기대효과             |
|-----|--------------|------------|-----------------------|
| 1   | 법원과 재판 이야기   | 제목         |                       |
| 2   | 소개합니다        | 강사 소개      |                       |
| 3   | 법            | 대주제 제시     |                       |
| 4   | 법이란          | 법의 원리 및 기능 | 법의 의미와 필요성 파악         |
| 5   |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 법의 원리 및 가치 | 긍정적 참여의식 증진           |
| 6   | 법의 분류        | 법의 체계      | 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7   | 재판           | 대주제 제시     |                       |
| 8   | 재판과 재판청구권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br>헌법적 가치관 함양 |

| 순 번 | 제 목         | 분 야      | 목표 및 기대효과                       |
|-----|-------------|----------|---------------------------------|
| 9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법의식      | 합리적 사고능력 증진<br>분쟁해결능력 함양        |
| 10  | 재판의 종류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br>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11  | 민사재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2  | 민사재판의 절차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3  | 민사재판의 법정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4  | 민사재판부의 유형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5  | 형사재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6  | 형사재판의 원칙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br>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17  | 형사재판의 절차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8  | 형사재판부의 유형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9  | 국민참여재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br>긍정적 참여의식 함양 |
| 20  | 행정재판과 가사재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21  | 소년보호재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22  | 학교폭력 1      | 법의식, 법지식 | 준법정신, 질서의식 함양                   |
| 23  | 학교폭력 2      | 법의식, 법지식 | 준법정신, 질서의식 함양                   |
| 24  | 법원          | 대주제 제시   |                                 |
| 25  | 법원의 역할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26  | 법원의 조직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27  | 대법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28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29  | 심급제도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br>제1심 재판의 중요성 이해       |
| 30  | 판사          | 대주제 제시   |                                 |
| 31  | 자랑스러운 법관    | 법원 인물    | 동기와 성취감 부여, 사법신뢰 증진             |
| 32  |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법교육 일반   | 동기와 성취감 부여, 사법신뢰 증진             |
| 33  | 감사합니다       | 마무리      |                                 |

### (다) 고등학생

고등학생용 강의안은 다음과 같이 재판절차의 이해를 통한 분쟁해결능력의 증진과 사법제도와 절차의 올바른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 순 번    | 제 목             | 분 야      | 목표 및 기대효과                        |
|--------|-----------------|----------|----------------------------------|
| 1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이해  | 제목       |                                  |
| 2, 3   | 소개합니다, 재판의 종류   | 강사 소개 등  | 사법제도 이해                          |
| 4      | 민사재판            | 대주제 제시   |                                  |
| 5      | 민사재판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
| 6      | 사례              | 법지식      | 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7      | 소의 제기(소장의 작성)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8      | 소의 제기(소장 제출 법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9      | 민사조정 신청         | 법제도      | 합리적 사고능력 증진<br>분쟁해결능력 증진, 조정 활성화 |
| 10     | 소송구조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1     | 재판부의 결정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2     | 민사재판의 절차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3     | 답변서의 제출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14     | 민사재판의 법정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5     | 민사재판의 원칙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16     | 판결의 선고          | 법제도      | 사법제도와 판결문 이해<br>분쟁해결능력 증진        |
| 17     | 상소제도            | 법제도      | 상소제도 이해<br>제1심 재판의 중요성 이해        |
| 18     | 전자소송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전자소송 활성화                |
| 19     | 형사재판            | 대주제 제시   |                                  |
| 20     | 형사재판            | 법제도, 법지식 | 사법제도 이해                          |
| 21     | 형사절차            | 법제도      | 형사절차 이해                          |
| 22     | 형사절차의 원칙        | 법지식      | 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23     | 사례              | 법지식      | 사회현상 이해, 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24     | 체포              | 법지식      | 형사절차 이해, 법에 관한 지식 증진             |
| 25     | 피의자의 구속         | 법지식      | 형사절차 이해, 법에 관한 지식 증진<br>사법신뢰 증진  |
| 26     |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 법지식      | 법에 관한 지식 증진<br>헌법적 가치관 함양        |
| 27     | 공소의 제기(공소장)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법률서식 이해                 |
| 28     | 국선변호인 제도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29     | 형사재판부의 유형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
| 30     | 형사재판의 절차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                 |
| 31, 32 | 판결의 선고          | 법제도      | 사법제도와 판결문 이해                     |

| 순번 | 제목          | 분야     | 목표 및 기대효과                       |
|----|-------------|--------|---------------------------------|
| 33 | 국민참여재판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br>긍정적 참여의식 함양 |
| 34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법제도    | 사법제도 이해, 사법신뢰 증진<br>긍정적 참여의식 함양 |
| 35 | 증인의 의무      | 법제도    | 긍정적 참여의식 함양                     |
| 36 | 판사의 길       | 대주제 제시 |                                 |
| 37 |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법교육 일반 | 동기와 성취감 부여, 사법신뢰 증진             |
| 38 | 판사가 되는 방법   | 법교육 일반 | 동기와 성취감 부여, 사법신뢰 증진             |
| 39 | 감사합니다       | 마무리    |                                 |

## 2. 강의시간

### (1) 산정기준

강의주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강의의 시간이다. 1교시 시간이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중학생의 경우 45분, 고등학교의 경우 50분이라는 사실은 학생들이 집중하여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강의 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관의 강의에 할애되는 시간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강의시간은 강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의 요청과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였다. 그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50분, 중학생의 경우 최대 60분,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70분의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 (2) 기본형과 축소형의 제시

제시한 강의내용을 여유 있게 낭독하는 것을 전제로 주제의 성격과 퀴즈시간까지 고려하여 주제별 소요시간과 전체 소요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는 43분, 중학생은 50분, 고등학교는 65분이다. 그렇지만, 대주제의 제시 부분과 강사 소개, 마무리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제만 해도 초등학교의 경우 22개, 중학생의 경우 26개, 고

등학생의 경우 31개로서 각 주제에 할당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실제 강의는 강사의 스타일, 현장 분위기,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의안은 구체적인 학년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 강의안이라도 학년이 낮아질수록 보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형 외에 일부 주제를 생략한 축소형을 제시하는 한편, 고등학생용 강의안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축소형을 세분하여 주제 일부를 생략한 전체 축소형과 민사재판형, 형사재판형으로 나누었다. 민사재판형과 형사재판형은 법원체험 프로그램에서 민사재판에 대한 설명과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을 독립적으로 할 때 각각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강사에 따라서는 적절한 주제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응용형 강의안을 구성할 수도 있다.

강의안은 전체적인 구성에 유의하면서도 주제별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축소형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강의의 구성과 주제별 연결에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 기본형에 비해 축소형에서는 주제별 강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초등학생

| 순 번   | 제 목              | 예정 시간  | 축소형 |
|-------|------------------|--------|-----|
| 32-2  | 소개합니다            | 2분     | ○   |
| 32-3  | 법                | 30초    | ○   |
| 32-4  | 법원 상징물           | 2분     | ○   |
| 32-5  | 법의 상징물 - 정의의 여신상 | 1분     | ○   |
| 32-6  |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곳    | 30초    | ×   |
| 32-7  | 법의 상징물 2         | 3분     | ×   |
| 32-8  | 법이란              | 2분     | ○   |
| 32-9  | 법의 필요성           | 2분 30초 | ○   |
| 32-10 | 법원과 재판           | 10초    | ○   |
| 32-11 | 법원의 역할(삼권분립)     | 2분 30초 | ○   |
| 32-12 | 분쟁해결방법           | 2분 30초 | ○   |
| 32-13 | 재판의 종류           | 2분 30초 | ○   |
| 32-14 | 민사재판의 법정         | 1분 30초 | ○   |
| 32-15 | 형사재판의 법정         | 30초    | ○   |

| 순 번       | 제 목            | 예정 시간  | 축소형 |
|-----------|----------------|--------|-----|
| 32-16     |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 1분 30초 | ○   |
| 32-17     | 법원에 법망치가 있을까요? | 1분 30초 | ○   |
| 32-18     | 법복             | 2분     | ×   |
| 32-19     | 법원의 종류         | 3분     | ○   |
| 32-20     | 법 상식           | 10초    | ○   |
| 32-21, 22 | 법 상식 1(인터넷 예절) | 2분 30초 | ○   |
| 32-23, 24 | 법 상식 2(저작권)    | 2분     | ×   |
| 32-25, 26 | 법 상식 3(학교폭력)   | 2분     | ○   |
| 32-27     | 꿈              | 10초    | ○   |
| 32-28     | 자랑스러운 법관       | 1분 30초 | ○   |
| 32-29     | 법원견학, 법원전시관    | 1분     | ×   |
| 32-30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30초    | ×   |
| 32-31     | 판사가 되려면        | 1분 30초 | ○   |
| 32-32     | 감사합니다          | 30초    | ○   |
| 합계        |                | 43분    | 34분 |

### (나) 중학생

| 순 번   | 제 목          | 예정 시간  | 축소형 |
|-------|--------------|--------|-----|
| 33-2  | 소개합니다        | 1분 30초 | ○   |
| 33-3  | 법            | 30초    | ○   |
| 33-4  | 법이란          | 2분 30초 | ○   |
| 33-5  |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 2분 30초 | ○   |
| 33-6  | 법의 분류        | 3분     | ×   |
| 33-7  | 재판           | 10초    | ○   |
| 33-8  | 재판과 재판청구권    | 1분 30초 | ○   |
| 33-9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1분 30초 | ○   |
| 33-10 | 재판의 종류       | 2분     | ×   |
| 33-11 | 민사재판         | 2분     | ○   |
| 33-12 | 민사재판의 절차     | 2분     | ○   |
| 33-13 | 민사재판의 법정     | 1분 30초 | ○   |
| 33-14 | 민사재판부의 유형    | 1분     | ○   |

| 순 번   | 제 목         | 예정 시간  | 축소형 |
|-------|-------------|--------|-----|
| 33-15 | 형사재판        | 2분 30초 | ○   |
| 33-16 | 형사재판의 원칙    | 1분 30초 | ○   |
| 33-17 | 형사재판의 절차    | 1분 30초 | ○   |
| 33-18 | 형사재판부의 유형   | 1분     | ○   |
| 33-19 | 국민참여재판      | 1분 30초 | ○   |
| 33-20 | 행정재판과 가사재판  | 1분 30초 | ×   |
| 33-21 | 소년보호재판      | 2분     | ○   |
| 33-22 | 학교폭력 1      | 2분     | ○   |
| 33-23 | 학교폭력 2      | 1분 30초 | ×   |
| 33-24 | 법원          | 10초    | ○   |
| 33-25 | 법원의 역할      | 2분     | ×   |
| 33-26 | 법원의 조직      | 1분     | ○   |
| 33-27 | 대법원         | 1분 30초 | ○   |
| 33-28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 2분 30초 | ○   |
| 33-29 | 심급제도        | 2분 30초 | ○   |
| 33-30 | 판사          | 10초    | ○   |
| 33-31 | 자랑스러운 법관    | 1분 30초 | ○   |
| 33-32 |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1분 30초 | ○   |
| 33-33 | 감사합니다       | 30초    | ○   |
| 합계    |             | 50분    | 40분 |

#### (다) 고등학생

| 순 번     | 제 목             | 예정 시간  | 축소형   |       |       |
|---------|-----------------|--------|-------|-------|-------|
|         |                 |        | 전체축소형 | 민사재판형 | 형사재판형 |
| 39-2, 3 | 소개합니다 등         | 2분     | ○     | ○     | ○     |
| 39-4    | 민사재판            | 10초    | ○     | ○     | ×     |
| 39-5    | 민사재판            | 1분 30초 | ○     | ○     | ×     |
| 39-6    | 사례              | 2분 30초 | ○     | ○     | ×     |
| 39-7    | 소의 제기(소장의 작성)   | 1분 30초 | ○     | ○     | ×     |
| 39-8    | 소의 제기(소장 제출 법원) | 1분 30초 | ○     | ○     | ×     |
| 39-9    | 민사조정 신청         | 1분 30초 | ×     | ○     | ×     |

| 순 번       | 제 목            | 예정 시간  | 축소형   |       |       |
|-----------|----------------|--------|-------|-------|-------|
|           |                |        | 전체축소형 | 민사재판형 | 형사재판형 |
| 39-10     | 소송구조           | 1분 30초 | ×     | ○     | ×     |
| 39-11     | 재판부의 결정        | 1분 30초 | ○     | ○     | ×     |
| 39-12     | 민사재판의 절차       | 1분     | ○     | ○     | ×     |
| 39-13     | 답변서의 제출        | 1분 30초 | ○     | ○     | ×     |
| 39-14     | 민사재판의 법정       | 1분 30초 | ×     | ○     | ×     |
| 39-15     | 민사재판의 원칙       | 3분     | ○     | ○     | ×     |
| 39-16     | 판결의 선고         | 3분     | ○     | ○     | ×     |
| 39-17     | 상소제도           | 3분     | ○     | ○     | ×     |
| 39-18     | 전자소송           | 2분     | ×     | ○     | ×     |
| 39-19     | 형사재판           | 10초    | ○     | ×     | ○     |
| 39-20     | 형사재판           | 1분 30초 | ○     | ×     | ○     |
| 39-21     | 형사절차           | 2분     | ×     | ×     | ○     |
| 39-22     | 형사절차의 원칙       | 2분 30초 | ○     | ×     | ○     |
| 39-23     | 사례             | 2분 30초 | ○     | ×     | ○     |
| 39-24     | 체포             | 1분 30초 | ○     | ×     | ○     |
| 39-25     | 피의자의 구속        | 2분 30초 | ○     | ×     | ○     |
| 39-26     |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 2분 30초 | ×     | ×     | ○     |
| 39-27     | 공소의 제기(공소장)    | 2분     | ○     | ×     | ○     |
| 39-28     | 국선변호인 제도       | 1분     | ×     | ×     | ○     |
| 39-29     | 형사재판부의 유형      | 1분 30초 | ○     | ×     | ○     |
| 39-30     | 형사재판의 절차       | 3분 30초 | ○     | ×     | ○     |
| 39-31, 32 | 판결의 선고         | 5분     | ○     | ×     | ○     |
| 39-33     | 국민참여재판         | 1분     | ○     | ×     | ○     |
| 39-34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분     | ○     | ×     | ○     |
| 39-35     | 증인의 의무         | 2분     | ×     | ×     | ○     |
| 39-36     | 판사의 길          | 10초    | ×     | ○     | ×     |
| 39-37     |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2분     | ×     | ○     | ×     |
| 39-38     | 판사가 되는 방법      | 30초    | ×     | ○     | ×     |
| 39-39     | 감사합니다          | 30초    | ○     | ○     | ○     |
| 합계        |                | 65분    | 약 48분 | 약 32분 | 약 35분 |

### (3) 융통성 있는 강의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하고 강의시간을 치밀하게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의는 미리 계획한 것과 다를 수 있다. 미리 준비한 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준비한 내용을 완벽하게 강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강사가 준비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법적 내용을 완결성 있게 전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지식이나 법률상식의 전달을 법관 강의의 유일한 목표로 볼 수도 없다. 그보다는 학생들과 즐겁게 상호 작용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내용요소는 필요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현장상황에 따라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과감하게 내용을 생략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때에는 준비한 전체 주제를 다루면서 주제별로 피상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일부 주제를 생략하고 나머지 주제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청된다.

## IV. 강의의 준비<sup>1)</sup>

### 1. 강의안의 숙지<sup>2)</sup>

무엇보다도 강의안의 숙지가 요청된다. 강의를 하기 전 전체적인 구성과 함께 주제별 내용과 관련 해설을 파악해야 한다. 강의내용을 예시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이를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다. 암기에 의한 강의는 부자연스러워 생동감 있는 강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예시한 강의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고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내용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에 도움이 되도록 주제별 핵심적인 단어를 표시하였다.

1) 이 부분은 대법원 출장 강연 교재 - 법원, 학교에 가다(파일형태)의 '티칭 팁' 부분을 참조하였다.

2) 강의안의 PPT 자료는 USB로 제공하는 한편, 코트넷(<http://gw.scourt.go.kr>)과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 2. 학교 교사와의 사전 협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사와 미리 연락하여 강의일시나 강의시간, 강의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는 한편 강의를 들을 학생들의 학년과 교육과정, 성별, 인원 수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강의내용이나 강의방식에 관한 학교 교사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경청하여 강의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의 강의라면 강의 장소에서 PPT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의 당일 PPT 자료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전자우편을 통해 미리 학교 교사에게 PPT 자료를 보내서 제대로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 3. 강의 장소 도착 및 예행연습

학교에서의 강의라면, 강의에 활용할 자료를 꼼꼼히 챙겨 강의 장소에는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한다. 도착 후에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기자재의 작동 여부와 밝기, 선명도, 칠판과 마이크의 사용 여부, 학생들의 자리 배치를 점검해 보며 간단한 예행연습을 해 본다. 강의 장소에 여유 있게 도착해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준비한 PPT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미리 대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의 배치와 학생들의 자리 배치에 따른 강사의 동선까지 미리 구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준비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의에서도 요청된다.

## V. 강의의 실시<sup>3)</sup>

### 1. 리듬감과 집중력 있는 강의를 위한 전략

3) 이 부분은 대법원 출장 강연 교재 - 법원, 학교에 가다(파일형태)의 '티칭 팀' 부분을 참조하였다.

학생들이 한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라고 한다. 집중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집중하는 상황과 쉴 수 있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리듬감 있게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리듬감과 집중력 있는 강의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시간 관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사가 항상 시간을 엄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강의 장소에 설치된 시계나 손목시계를 참고하여 시간을 조절하도록 한다. 강의를 계획할 때 미리 3, 4단계 정도로 강의내용을 잘라 두고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을 하면 강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의 강의에서는 강의 도입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좀 이르다 싶을 정도로 빨리 본 강의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조절할 때 유리하다.

### (2) Ice-Breaking

강의의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e-Breaking이라고 불리는, 강사와 학생 사이의 어색함을 풀어 주는 작업이다. 강사가 웃는 얼굴과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강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 주변의 이야기, 강사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 강의내용과 관련된 물건이나 사례 등으로 학생들이 강사와 강의내용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므로, 어떻게 Ice-Breaking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한다.

### (3) 손동작과 위치 이동

강의 전체에 변화와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는 강사가 종종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다. PPT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학생들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쪽으로 좀 더 다가가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다가 강단으로

돌아오는 등의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학생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학생들에게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다. 손동작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손이나 표정 등을 활용한 강의방식은 내용을 분명하고 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4) 목소리의 변화

훌륭한 강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어려운 방법이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똑같은 크기와 높낮이로 강의를 계속한다면 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지루해할 수밖에 없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최대한 크고 과장된 몸짓과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목소리를 활용해서 리듬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다.

#### (5) 퀴즈의 활용

학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퀴즈를 내는 것이다. 간단한 기념품을 걸고 하면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강의안에서는 곳곳에서 퀴즈문제를 제시하였다. 대개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한 내용에 관한 퀴즈를 내게 되는데 이는 시험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그보다는 강의 중간에 강의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강의 시작 시에 미리 퀴즈를 예고하면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퀴즈는 아니더라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좋고,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약간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효과적이다. 답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좌석표나 출석부를 보고 이름을 지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퀴즈나 질문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강의를 위한 것이므로 특정 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6) 내용 함께 읽기

실제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 자주 쓰는 방식이다. 법조문이나 원칙 등의 비교적 짧은 내용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면 학생들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이렇게 함께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 2.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방법

아무리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주의를 흐트러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실제 강의에서는 대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시도를 하면 좋을 것이다.

### (1) 박수하기

레크리에이션 강사나 학교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박수 세 번 시~작, 짹 짹’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박수하는 횟수를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으로 줄여 가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한다. 질문에 잘 대답한 학생에게 다 함께 박수를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강의 분위기를 활발하게 이끄는 요령이다.

### (2) 눈 감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친구들과 떠들면서 산만해진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들 그다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강사의 감정만 악화될 수 있다. 그보다는 입 대신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뜬금없이 눈을 감으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을 감고 강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상상해 보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20, 30초만 눈을 감고 있어도 강의 분위기가 충분히 정돈될 수 있다.

### (3) 일어서기, 스트레칭과 안마

무더운 여름에 강의를 하는 경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나 지겨워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잠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서로 안마를 해 주도록 하면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일어서기는 자세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강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인 수업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 3. 질의응답의 대비

통상적인 경우 강의를 끝나면 학생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게 된다. 질문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인해 당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다. 학교 교사로 하여금 미리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전달받아 그 중 적절한 질문을 취사선택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일선 법원에서 정리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1.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재판 또는 황당했던 재판은 무엇인가요?
2. 가장 힘든 재판 또는 가장 많은 재판은 무엇인가요?
3. 판사가 되어서 좋은 점(특권), 나쁜 점(직업병)은 무엇인가요?
4. 판결을 내린 후 후회한 적이 있나요?
5. 법은 몇 개나 있나요? 그 법을 다 외우시나요?
6.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가벼운 벌, 무거운 벌은 무엇인가요?
7. 사형 선고를 내려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사형 선고를 하나요?

4) 대구지방법원, 법교육을 위한 매뉴얼(파일형태).

8. 판사님께서 내린 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9. 재판에서 결론이 안 날 때가 있나요?
10. 피고인이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1. 판사가 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판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인가요?
13. 판사가 된 계기 또는 언제 판사의 꿈을 가졌나요?
14.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15.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16. 친척이나 친구가 피고인일 때 어떻게 재판하나요?
17. 법정 판사석 쪽 벽면은 왜 자주색인가요?
18. 오각형의 법원 무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sup>5)</sup>
19. 어린 학생들도 재판을 받나요?
20. 연봉(봉급)은 얼마나 되나요?
21. 법원은 언제 처음 생겼나요?
22.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3. 판사, 대통령도 재판을 받나요?
24. 교사의 체벌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5. 두발 규제는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26.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

5) 법원기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오각형은 무궁화이고 무궁화 속에 펼쳐진 책을, 책 속에 '법원' 자를 표지한다(법원기에 관한 내규 제2조).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법관 강의안 I

# 초등학생을 위한 강의안

제 2 장

법, 재판 그리고 꿈





## 32-2. 소개합니다<sup>6)</sup>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 판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2000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지방법원, ○○지방법원 등을 거쳐 지금은 ○○(지방,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나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판사를 직접 만나 본 사람이 있나요? 직접 판사를 보니까 어떨까요? 판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잘생기진(예쁜) 않아도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를

6) 발표화면 슬라이드 순번과의 일치를 위해 32-2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32-1은 제목 부분이다.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틈틈이 퀴즈도 내고 답변을 잘한 학생에게는 기념품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법과 법원, 재판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대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 재미있을지,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듣고 저와 함께 여행한다면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 판사, ○○(지방, 고등)법원, ○○재판, 편안하게, 퀴즈, 기념품, 법, 법원, 재판, 꿈, 여행

### 해 설

강의의 시작 부분이다. 초등학생들이 판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 주는 차원에서 재미있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사에 대한 소개는 표준화하기 곤란하여 성명, 학력, 경력, 하는 일 정도로 분류하였다. 강사에 따라 적절히 내용을 구성하되 발표화면을 편집하여 강사의 사진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의의 시작 단계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으나, 강의 장소가 학교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소개항목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요청된다.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집중을 위해서 실제로 기념품을 보여주면서 이를 준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좋다. 기념품으로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이나 대법원에서 발간한 초등학생용 법교육 교재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또는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제작한 기념품 등이 적절하다. 물론 기념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념품에 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면 된다.

## 32-3. 법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먼저 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의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이에요. 아래 사진은 대법원 안에서 재판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엄숙하기도 하지만 근사하기도 하지요?

### 해 설

대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사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해도 된다.

## 32-4. 법원 상징물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문제) 먼저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 있나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에요. 학교에도 교목, 교화와 같이 학교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에도 법원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징물은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나중에 법원과 관련된 책이나 봉투를 보거나 장소에 가게 되면, 이 상징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보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상징물을 자세히 보면 한 손에는 책 같은 것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전을 들고 있으면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판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이 상징물이 의미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 핵심 단어

상징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원, 책, 저울, 판사, 의미

### 교과서 관련 단위

초등학교 사회 4-2 ‘지역사회의 발전’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4-2 교과서의 ‘지역사회의 발전’ 단원에서 상징물을 사용하는 까닭, 우리나라 상징물의 의미, 지역의 상징물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상징물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내용이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법을 추상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원의 상징물부터 소개하는 방식으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였다.

## 32-5. 법의 상징물 - 정의의 여신상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물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을 본뜻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왼쪽에 다른 정의의 여신상도 있지요? 이는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서양의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일반적으로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이와 다릅니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칼을 통해 강제력을 상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것은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규칙과 기준의 공정한 적용을 상징하기 위해 칼을 법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든 저울은 빈부나 권력에 구애받지 않는 평등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 중에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지 않은 이유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핵심 단어

정의의 여신상,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 디케(Dike), 저울, 칼, 법전, 강제력, 규칙과 기준의 공정한 적용, 평등한 판단, 눈, 올바른 판단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보통 정의의 여신상은 중학교 단계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상은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에서 사진으로 제시되고 있고 법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에게 소개하되, 보다 쉬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단어를 변경하였다.

흔히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것은 선입견이나 주관성의 배제, 공평무사함이나 불편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나, 이 점은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있다. 서양 정의의 여신상도 원래 눈을 뜨고 있었는데 소송 남발로 사법기관의 업무를 마비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목판화)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이 원래의 모습이고 사법기관의 공평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도되었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칼을 휘두를 수 없고 저울을 쟀 수도 없는 점에서 눈을 가린 것과 칼과 저울 등을 들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실제로 서양 정의의 여신상 중에는 눈을 가리지 않은 것도 많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서양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지 않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소개하였다.

## 32-6.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곳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요? 여기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정 앞 로비입니다. 보이나요? 정의의 여신상은 대법정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을 방문하게 되면 정말 그 자리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정의의 여신상 맞은편에 어떤 분의 동상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이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지요? 이 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정의의 여신상, 동상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의의 여신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위치를 설명하였다. 같은 장소에 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동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강의의 마지막까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살짝 소개한 것이다.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가급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 32-7. 법의 상징물 2

### 발표화면



### 강의내용[3분]

이번에는 동양에서 법을 상징한 것을 살펴볼까요?

(문제)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는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신성한 동물 앞에서 판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가 그것입니다. 해치라고도 하죠. 판단을 하는 사람은 먼저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해태를 그들 앞에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해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달려가 물거나 머리의 뿔로 그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법을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법이라는 한자의 옛날 문자를 보면 그 속에 해태를 의미하는 글자가 들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해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태와 조금 다르게 생겼지요? 원래 해태의

모습은 이처럼 외뿔이 달린 무서운 모습이었답니다. 이 해태상은 판사님들이 교육을 받는 사법연수원에 있는 것이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판사님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원편은 대법원에 있는 법과 정의의 상이라는 조형물인데, 여기에도 해태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 원의 수직상승 부분이 해태의 뿔과 꼬리를 의미하고, 안쪽 반원의 수평구조 부분은 저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과 정의의 상 뒤편에 어떤 글씨가 보이지요? 누가 한번 읽어 볼래요? 맞습니다. 대법원 현관 장식벽에는 ‘자유 · 평등 · 정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법과 정의의 전당인 대법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은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해태와 같이 무서운 것이 연상되나요? 그렇지만 해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태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고마운 것이예요. 다시 해태를 보세요. 여전히 무섭게 보이나요? 혹시 귀엽게 보이진 않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 핵심 단어

해태, 해치, 한자, 무서운 모습, 사법연수원,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 자유 · 평등 · 정의, 해태의 역할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도덕 6 ‘우리 함께 지켜요’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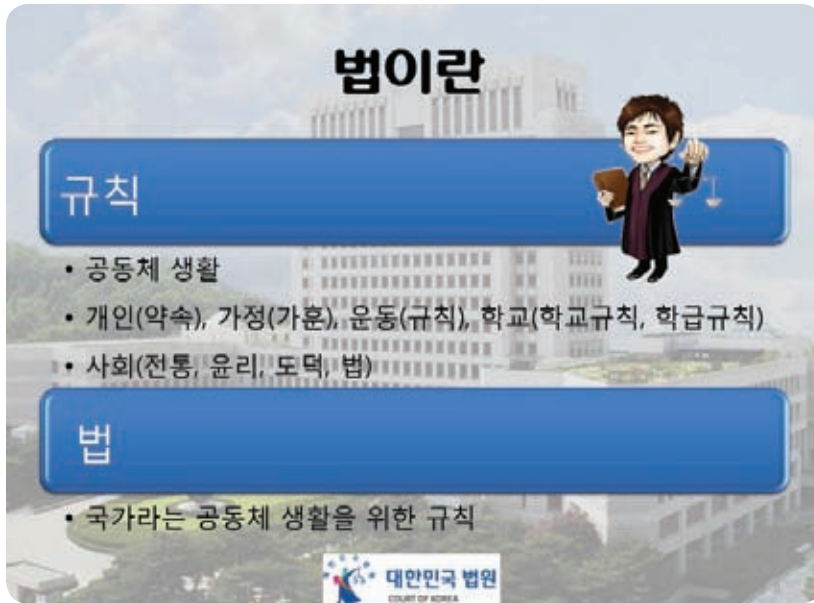
초등학교 도덕 6 교과서의 ‘우리 함께 지켜요’ 단원에서 사진으로 해태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과 함께 동양에도 법의 상징물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해태상을 설명하였다. 일부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에서 해태상과 대법원 조형물을 소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태상을 소개한 이유는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일부 법교육 교재에서는 법의 한자(法)와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물(水)’에 따라 ‘보낸다(去)’는 해석과 물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하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없애는 게 법이라는 해석, 물은 어느 장소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므로 늘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법이라는 해석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해태 치(鵠)자를 뺀 나머지로 법의 어원을 해석하는 것은 법의 의미를 오도하는 해석이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어, 그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였다.

## 32-8. 법이란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 필요하지요. 개인 사이에 약속, 가정에 가훈, 운동경기에 규칙, 학교에 학교규칙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는 전통, 윤리, 도덕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도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칙인데, 법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나 강제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에 대해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이란 말에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라는 말은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글씨 쓰는 법, 운전하는 법, 공부하는 법 모두 ‘법’이라는 말이 들어

가지요? 이럴 때 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모범이 되어 그렇게 따라 하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상태나 방법을 의미하겠지요? 헌법과 같은 어려워 보이는 말에 쓰인 ‘법’이라는 글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법이란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따르고 지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배우는 것이고 우리 삶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보면 법은 무척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 핵심 단어

공동체 생활, 규칙, 전통, 윤리, 도덕, 국가라는 공동체, 최소한의 규칙, 강제력, 모범, 행복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도덕 3 ‘함께 사는 세상’

초등학교 도덕 6 ‘우리 함께 지켜요’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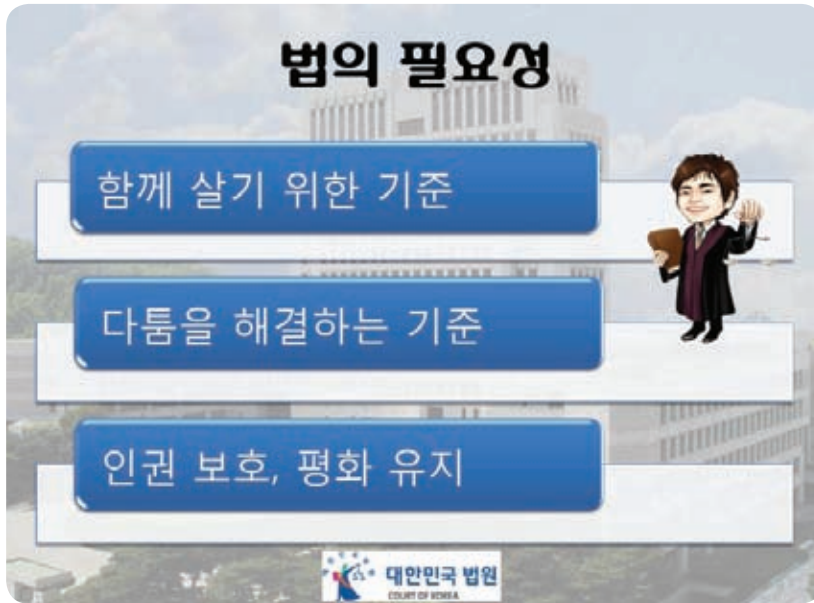
사회규범의 하나로 법을 설명하는 중학교와는 달리 규칙의 하나로 법을 설명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방식대로 법을 설명하였다. 법교육학에서는 법의 특성으로 강제력을 강조하여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했을 때의 강제력보다는 법을 준수했을 때의 유리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학생들이 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은 함께 살기 위한 규칙으로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과 같이 법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권리’나 ‘의무’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만 ‘헌법’ 외의 다른 법률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민법에 대해 “이웃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면 이와 관련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형법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았다.”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강의에서도 가급적 구체적인 법률명의 사용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 32-9. 법의 필요성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법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다툼이 없도록 규칙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없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툼을 하고 결국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기준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하여 만들어 가는 원칙입니다.

또한, 법은 좁게는 가정, 넓게는 사회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래 다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다툼

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다툼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각 생활영역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하고 때로는 다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하자면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실현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런데 법의 주인인 국민들이 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단어

함께 살기 위한 기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 다툼을 예방, 인권을 보호, 평화로운 생활, 법의 주인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4-1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초등학교 도덕 6 ‘우리 함께 지켜요’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법을 통해 서로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로운 사회

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여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의 필요성을 보다 풀어서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를 든 것은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에서 ‘인권과 인권 보호’를 별도의 장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고 인권교육도 법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해 “인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에서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참여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초등학교 사회 4-1 교과서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단원에서는 주민자치를 위주로 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문제해결 방안 등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 32-10. 법원과 재판

 발표화면



 강의내용[10초]

다음은 법원과 법원에서 하는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2-11. 법원의 역할(삼권분립)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문제) 여러분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아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의 세 기관이 나누어 맡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한 업무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따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먼저 법을 만드는 일, 즉 입법을 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집행이란 법에 따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땅을 사들이고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법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법원이 아닐까 싶네요.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법적인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겼

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때 법의 내용을 풀이하여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밝히고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즉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며,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 핵심 단어

삼권분립, 입법, 국회, 집행, 정부, 법원, 적용, 다툼을 해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 사회질서 유지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4-1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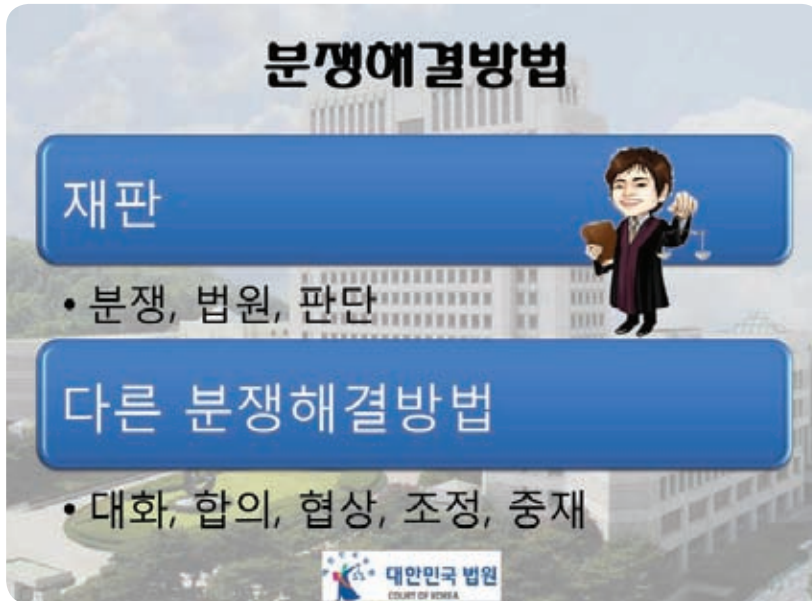
### 해 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용어보다는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국회, 정부, 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같은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원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의 대비를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법률·명령·규칙·조례와 같은 법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엄밀히 보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법이 아닌 법률이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법률보다 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법의 집행이나 적용, 해석과 같은 용어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일 수 있다. 교과서에서도 그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 32-12. 분쟁해결방법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재판이란 어떤 다툼, 즉 분쟁에 대해 법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요. 재판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재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재판만 있는 것일까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다양한 의견 제시와 대화를 통한 합의와 이러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 외에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협상, 조정, 중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은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싸웠다면 둘이 직접 화해과정을 모색하는 것이죠. 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 사람이 철수와 영희의 생각을 다 듣고 양쪽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재는 조정이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철수와 영희가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사람은 동현이라고 생각해서 동현이를 중재자로 정하면 동현이가 양쪽 이야기를 잘 듣고 결정을 내려 주겠죠? 조정에서는 꼭 동현이의 말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동현이 말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은 분쟁해결의 기준을 세우는 점에서 중요하고, 누구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은 분쟁해결의 최후 수단입니다. 사소한 분쟁임에도 무조건 재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재판 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과 조정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핵심 단어

재판, 분쟁해결방법, 대화, 합의, 협상, 조정, 중재, 최후 수단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4-2 ‘지역사회의 발전’

초등학교 도덕 5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삶’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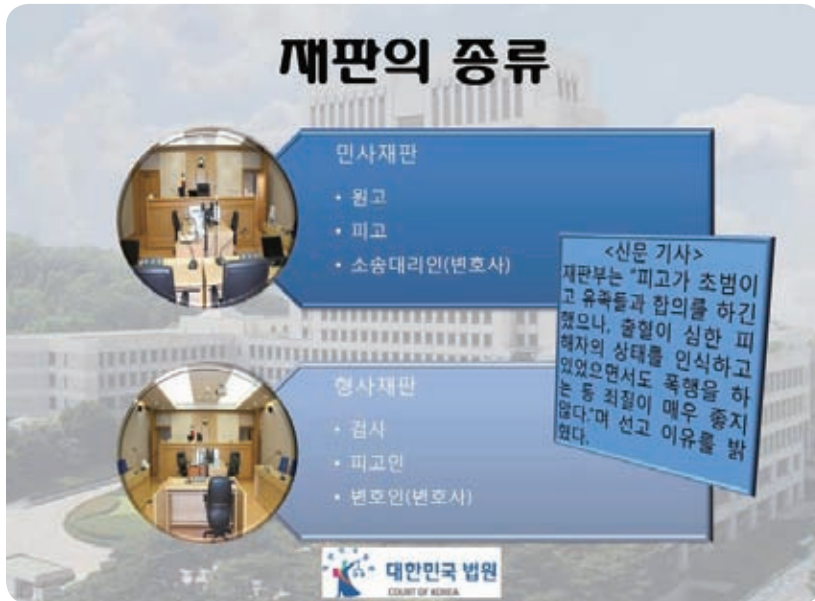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에서는 재판에 대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 풀어서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사회 4-2 교과서의 ‘지역사회의 발전’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로나 공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초등학교 도덕 5 교과서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삶’ 단원에서는 갈등의 의미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포레중재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내용

에 따라 재판 외의 분쟁해결방법을 소개하였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은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쉽게 설명하면 무방할 것이다.

## 32-13. 재판의 종류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알고 보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을 신청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돕거나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은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검사가 피해자와 국가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문제) 지금 오른쪽에 신문기사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을 소개하고 있으니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용어가 다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 핵심 단어

민사재판, 형사재판,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에서, 민사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 형사재판은 사기·강도·살인과 같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사재판의 사례로 조용한 주택가에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영업을 하는 식당의 문제, 형사재판의 사례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재판과 관련된 용어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도 중요하기에 이를 제시하였다.

## 32-14. 민사재판의 법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이 열리는 곳을 법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관여하는 사람도 다르지만 법정의 구조도 다릅니다. 법정의 구조만 보아도 재판의 원칙을 알 수 있어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인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있고 이들을 도와주는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했지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와 소송대리인이 이처럼 판사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 있고 판사는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판사가 원고, 피고와 같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법정에는 방청석이 있는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누구라도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을 구경할 수 있어요.

방청석에서 보면 판사가 있는 곳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편 위에 있는 사진은 판사 자리에서 방청석을 바라본 것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그리고 오른쪽 밑 사진을 보면 법정에 스크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법정에는 각종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스크린을 통해 각종 서류를 함께 볼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방식입니다.

### 핵심 단어

법정, 재판의 원칙,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대등한 지위, 공개된 장소, 전자소송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중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는 법정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재판의 원칙 중에서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만을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법정의 구조를 소개하면서 당사자 평등원칙, 직접주의, 공개심리주의와 같은 민사재판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전자소송 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소송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발표화면



 강의내용[30초]

이번에는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살펴볼까요?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민사재판 당사자의 자리가 판사의 앞에 있는 것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자리와 피고인의 자리가 판사의 오른쪽과 왼쪽에 마주 보고 위치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지요.

 **핵심 단어**

형사재판, 공개된 장소, 검사, 피고인, 변호인

 교과서 관련 단위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단계에서 ‘증인’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제외하였다. 국민참여재판도 중요한 법교육 소재이나 초등학교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여 제외하였다.

## 32-16.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이번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판사는 쉽게 설명하면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재판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형사재판에서는 과연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검사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잡고 자료를 조사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뒤, 재판에 참여하여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 주고 도와주면 좋지 않겠어요?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끔 판사와 검사가 같은 일을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사는 정부

안에 있는 검찰청에, 판사는 법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어느 쪽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정의의 편에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판사님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으로 나를 지켜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핵심 단어

판사, 판단, 검사, 형사재판,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인, 양심, 독립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교과서에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은 있어도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는 점을 반영하여,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였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와 업무로서의 소송대리인 내지 변호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 32-17. 법원에 법망치가 있을까요?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문제) 법원에 법망치가 있을까요?

재판과 관련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법망치일 겁니다. 법봉이라고도 하지요.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팡팡팡.’ 이렇게 법망치를 두드리는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상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장면은 드라마나 영화, 혹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법망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법망치는 법정이 소란한 경우 질서를 유지하고 판사의 판결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법망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권위적인 법원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망치보다는 국민 모두가 법원을 신뢰할 때 저절로 법원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 아닐

까요? 법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우리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 핵심 단어

법망치, 권위, 신뢰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법망치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원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없애는 취지에서 현재 법망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법원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는 차원에서 재미있게 설명하면 된다.

## 32-18. 법복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이제 판사가 입는 법복을 살펴볼까요? 법복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나요? 서양에서 검은색 복장은 공정과 지혜, 양심을 상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관과 학자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잘 입지 않는 원피스 스타일이죠? 어떤 옷과 비슷해 보이나요? 졸업식 때 입는 옷과 비슷하지요? 그 이유는 이미 설명했죠. 학자들이 법관과 비슷한 옷차림을 했거든요.

화면은 현재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입는 법복입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디자인했고 앞단과 소매, 넥타이 등에 한국적인 미를 가미하고 법원을 상징하는 문양까지 담아서 마무리했어요. 한번 입고 싶지요?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입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법원을 견학하게 되면 그때 입어 볼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복은 여름용과 겨울용이 따로 있을까요?

### 핵심 단어

법복, 검은색, 법관, 학자, 견학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학생들이 법복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법교육 교재에 따라서는 법복의 변천사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복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의라면, 방문한 법원에서 법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 32-19. 법원의 종류

### 발표화면



### 강의내용[3분]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분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곳에 있으며 제2심 재판을 맡습니다.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도마다 하나씩 있고 제1심 재판을 맡습니다.

이렇게 법원과 재판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그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 그렇지만 모든 사건마다 세 번씩 재판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말 표현 중에 ‘삼세판’이라는 것이 있지만, 재판은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하는 데 돈과 시간이 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첫 번째 재판에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도 신중한 재판을 해야겠지만, 국민들도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핵심 단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세 번, 한 번으로, 신중한 재판, 판결을 신뢰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에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 있을 뿐 법원 조직, 특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종류를 소개하였다. 교과서에서는 3심 제도가 원칙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제1심 재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소와 관련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32-20. 법 상식

### 발표화면



### 강의내용[1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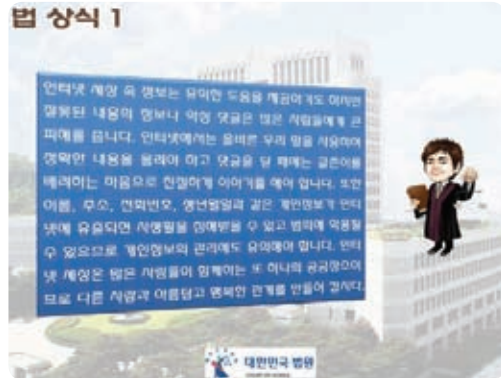
다음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OX 퀴즈로 제시되니까 잘 듣고 답변하세요.

### 해 설

추상적으로 준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 세 분야를 선정해 쉬운 문답 형식으로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문제와 그에 대한 답변을 발표화면에 기재하였으므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화면에 있는 문제를 내고 답변을 읽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 있으므로, 장면 전환에 유의해야 한다.

## 32-21, 22. 법 상식 1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거짓 정보를 올리거나 폭언·욕설 등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 장)

물론 문제가 되지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 세상 속 정보는 유익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내용의 정보나 악성 댓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인터넷에서는 올바른 우리 말을 사용하여 정확한 내용을 올려야 하고 댓글을 달 때에는 글쓴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또 하나의 공공장소이므로 다른 사람과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도덕 4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

초등학교 도덕 5 ‘밝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

초등학교 사회 6-2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 해 설

초등학교 도덕 4 교과서의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 단위에서는 인터넷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실천을, 초등학교 도덕 5 교과서의 ‘밝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 단위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과 윤리, 인터넷 중독의 문제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단위에서는 인터넷 사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표준어 어법을 지키며 맞춤법에 맞지 않는 채팅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인터넷 사용에서 주의할 점을 문제로 구성하였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법보다는 예절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범죄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 32-23, 24. 법 상식 2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한 음악CD에 담긴 노래파일을 나의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괜찮을까요?

(다음 장)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저작물의 주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은 옆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음악CD에 있는 노래는 음악저작물이죠. 저작물은 일종의 재산이므로 이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작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6-2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의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단원에서는 저작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왜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일종의 재산이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개인적인 소비를 넘어 마치 저작물의 주인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먼저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32-25, 26. 법 상식 3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 학생이 반 친구를 미워하여 따돌리고 때리더라도 초등학교는 나이가 어리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다음 장)

반 친구를 따돌리고 때리는 행위는 비겁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이라고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10세 이상의 어린이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이라는 교육과 선도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어린이를 대신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도덕 6 ‘우리 함께 지켜요’

### 해 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처벌보다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2-27. 꿈

### 발표화면



### 강의내용[10초]

이제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꿈과 이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 32-28. 자랑스러운 법관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초반에 얘기했었지요. 대법원 로비에 동상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분은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1887년에 태어난 김병로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침략에 분개하여 의병투쟁에 참가했다가 일본을 이기고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려면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뿌리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변호사로서 독립투사들의 변호에 나서게 돼요. 동시에 법학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하면서 직접 독립운동을 하고, 다른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는 일도 하셨다고 해요.

해방 후에는 초대와 제2대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법관의 첫 번째

미덕은 청렴과 강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그만 부탁이나 선물도 받지 않았으며 법관들에게 늘 명예를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김병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 핵심 단어

가인 김병로 선생님, 독립운동, 대법원장, 사법부의 독립

### 교과서 관련 단위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법교육 교재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다. 인물사적 측면에서 존경할 만한 법관을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증진하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 32-29. 법원견학, 법원전시관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법원과 재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을 방문하여 견학하거나 재판을 받  
칠할 수 있습니다. 법원별로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 선생님께 견학 신청  
을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법원 1층에는 법과 법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법원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법의 기원부터 현재의 법제도에 이르기까지 법과 관련  
된 유물과 법원의 재판·제도·조직을 볼 수 있는 법과 법원실, 여러 판사님들의 유품과  
법복의 변천사, 중요 판결문 등을 전시한 법원 역사실, 애니메이션과 전자책, 퀴즈 게임  
을 통해 법과 법원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어린이 법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복을 입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는데 1시간 정도 소  
요되니까 시간이 나면 꼭 방문해서 귀중한 체험을 해 보세요.

### 핵심 단어

법원 견학, 재판 방청, 법원전시관, 법과 법원실, 법원 역사실, 어린이 법 체험실

### 교과서 관련 단원

초등학교 사회 3-1 ‘사람들이 모이는 곳’

초등학교 사회 4-1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해 설

초등학교 사회 3-1 교과서와 사회 4-1 교과서에서 고장의 중심지나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점에 착안하여, 법원과 법원전시관 견학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의라면 앞부분의 법원 견학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필요가 있다. 법원전시관은 서울에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 점을 고려한 설명이 필요하다.

## 32-30.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인터넷을 통해서도 법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대법원과 사법부, 법원이 하는 일, 법관이 되는 방법, 재판의 종류와 절차를 상세히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법교육 교재, 퀴즈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 핵심 단어

인터넷,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대법원과 사법부, 법원이 하는 일, 법관이 되는 방법, 재판의 종류와 절차, 법교육 교재

 교과서 관련 단위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해 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좋은 법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이를 소개하였다.

## 32-31. 판사가 되려면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판사는 재판을 통해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에 비추어 무엇이 옳은지 밝혀 줌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주는 것이지요.

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은 많습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우선 판사에게는 균형감각이 요구됩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반드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는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사람이라면 누구든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모두 갖추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의로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훌륭한 판사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법원을 빛내길 바랍니다.

 **핵심 단어**

균형감각, 다양한 지식과 경험, 존중, 인내심, 정의로운 마음과 열정

 **교과서 관련 단위**

초등학교 사회 6-2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해 설**

이 부분은 법교육보다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나, 넓게 보면 진로교육도 법교육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32-32. 감사합니다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이상으로 저와 함께 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여행이었나요? 오늘 여행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법이나 법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법관 강의안 II

제3장

# 중학생을 위한 강의안

법원과 재판 이야기





## 33-2. 소개합니다<sup>7)</sup>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 판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2000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지방법원, ○○지방법원 등을 거쳐 지금은 ○○(지방,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판사를 직접 만나 본 사람이 있나요? 직접 판사를 보니까 어떨까요? 판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잘생기진(예쁜) 않아도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를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틈틈이 문제도 내고 답변을 잘한 학생에게는 기념품도 드릴

7) 발표화면 슬라이드 순번과의 일치를 위해 33-2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33-1은 제목 부분이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법과 재판 그리고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이 재미있을지,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듣고 의미를 새긴다면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 판사, ○○(지방, 고등)법원, ○○재판, 편안하게, 기념품, 법, 재판, 법원

### 해 설

강의의 시작 부분이다. 학생들이 판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 주는 차원에서 재미있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사에 대한 소개는 표준화하기 곤란하여 성명, 학력, 경력, 업무 정도로 분류하였다. 강사에 따라 적절히 내용을 구성하되 발표화면을 편집하여 강사의 사진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의의 시작 단계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으나, 강의 장소가 학교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소개항목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요청된다.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집중을 위해서 실제로 기념품을 보여주면서 이를 준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좋다. 기념품으로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이나 사법발전재단에서 발간한 법교육 교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또는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제작한 기념품 등이 적절하다. 물론 기념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념품에 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면 된다.

## 33-3. 법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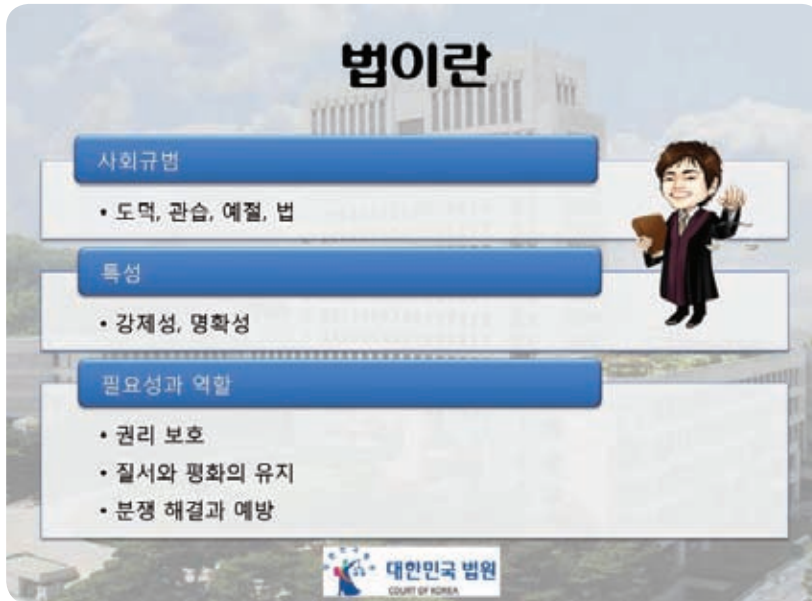
먼저 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입니다. 아래 사진은 대법원에 있는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엄숙하기도 하지만 근사하기도 하지요?

### 해 설

대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사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해도 된다.

## 33-4. 법이란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먼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나 기준이 형성되는데, 이를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규범에는 법 외에 도덕, 관습, 예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도덕 등과는 달리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 행동규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도덕 등과는 달리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기에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덕 등의 사회규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법의 필요성은 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법이 없다면 힘센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거예요. 법은 힘없는 사람이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

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지도 몰라요. 또한, 법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됩니다. 법이 없다면 사회는 분쟁상태가 지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겠지요? 법은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예방하기도 합니다. 법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미리 조심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에 강제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우리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에서 어려우면서도 무서운 이미지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언제나 그리고 어느 곳이나 있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자 원칙이며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삶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알고 보면 법은 무척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 핵심 단어

사회규범, 법, 도덕, 관습, 예절, 강제성, 명확, 법의 필요성, 권리를 보호, 질서와 평화를 유지, 분쟁을 해결, 분쟁을 예방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도덕 1 ‘도덕의 의미’

중학교 도덕 2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교과서 관련 단원에서도 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압축적·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풀어서 설명하였다. 법의 특성으로 강제성을 들고 있지만, 이를 통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 33-5.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이지요?

(문제)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사회이지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법치주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을 통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실현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법의 주인이라면서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과연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예요.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요. 집집마다 법전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련되는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핵심 단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의 주인,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법교육의 목적인 긍정적 참여의식의 증진과도 관련된다.

## 33-6. 법의 분류

### 발표화면



### 강의내용[3분]

법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종류를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과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적인 법, 즉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민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법, 즉 사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려 간 것이라면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기는 범죄행위니까 이런 행위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법은 공법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요.

사법에는 민법과 상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상법 등이 포함되고,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개인 간의 문제인데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은 경우, 가게 주인은 보수를 한없이 낮출 수 있겠죠? 하지만 보수가 지나치게 적어지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 사적인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소한 시간당 얼마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해 주게 돼요. 이건 분명히 사적인 관계이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지요. 이런 법들을 사회법이라고 하고 ‘사법의 공법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사회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법은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됩니다.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 성질,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이러한 실체법상 권리의 실현과 보장, 의무의 이행과 강제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실체법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사적인 권리와 의무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실체법이며,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이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 핵심 단어

사법, 공법, 민법, 범죄행위, 형법, 상법, 헌법, 행정법,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실체법,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생생활과 법’

### 해 설

중학교 과정에서 법을 생활관계에 따라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부 교과서에서만 법을 자연법과 실정법, 실체법과 절차법, 성문법과 불문법,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재판제도의 이해와 관련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분량이 많으므로 적절한 생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 33-7. 재판

 발표화면



 강의내용[10초]

다음은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3-8. 재판과 재판청구권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짧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재판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내리는 판단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계된 사람들의 말과 자료를 검토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에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있어요. 적극적인 효과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지요.

소극적인 효과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자가 하는 재판이라든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은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핵심 단어

재판, 분쟁, 판단, 기회가 보장, 재판청구권, 기본권, 적극적 효과, 소극적 효과, 실질적 보장,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인권 보장과 헌법’

### 해 설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본권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재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헌법과의 연결을 시도해 재판청구권까지 설명하였다.

## 33-9.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은 중요하고 재판청구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과 관련해 이 점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 외에 협상, 조정, 중재 등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협상은 분쟁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만약 분쟁당사자가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조정이란 비슷한데 제3자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쟁당사자가 중립적인 제3자를 중재자로 정하면 중재자가 양쪽 이야기를 잘 듣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제3자의 말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말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제3자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재판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통한 권리 주장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재판 외에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 핵심 단어

협상, 대화와 타협, 조정, 제3자, 중재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도덕 1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중학교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인권 보장과 헌법’

### 해 설

중학교 도덕 1, 2 교과서에서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양보와 타협,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고 있고, 중학교 사회 2 일부 교과서에서는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을 명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외에 다른 분쟁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협상, 조정, 중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33-10. 재판의 종류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재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사건도 달라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재판을 별개로 이해하는 것 보다는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재판이 한 번에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복잡화되고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게 차례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도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눌 수 있지요.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말하고, 형사재판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이지요.

가사재판은 민사재판 중에서도 특수성이 있는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재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재판인데, 이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다툼인 민사재판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재판은 행정재판과 유사한 데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다투는 재판입니다. 선거재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재판이라고도 하는데,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을 성인과 달리 취급하여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군사재판은 형사재판 중에서도 특수한 지위에 있는 군인 등이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재판입니다.

이 중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가사재판과 행정재판, 소년보호재판은 따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관련성,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선거재판, 소년보호재판, 군사재판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재판의 종류로 민사재판·형사재판·가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소년보호재판을 설명하고 있으나,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학생들이 각 재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각 재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였고,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재판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교과서에 따라서는 ‘소년재판’이라고 한 것도 있다. 특허재판은 특허법원에 대한 설명과 관련되고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기에 추가하였다.

## 33-11. 민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했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어떤 땅에 대해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민사재판에 해당합니다.

(문제) 민사재판의 사례를 추가할 사람 있나요?

이러한 민사재판에는 민법, 상법과 같은 사법과 민사소송법과 같은 공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은 다들 알죠? 그럼 원고와 피고와 같은 당사자를 도와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하게 되지요.

### 핵심 단어

민사재판, 분쟁, 민사재판의 사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원고, 피고, 당사자, 소송 대리인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원고’, ‘피고’와 같이 재판에 관계된 용어는 중학교 과정에서 처음 나온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교과서,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교과서, 민사재판에서 원고나 피고의 편에 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설명하는 교과서, 민사재판에서 원고나 피고의 편에 서서 재판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설명하는 교과서까지 교과서별로 민사재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별히 소송대리인을 설명하고 변호사와의 차이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적용되는 법률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언급한 이유는 중학교 단계에서 공법과 사법의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33-12. 민사재판의 절차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민사재판은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서인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보냅니다. 피고에게 원고가 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조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며 그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핵심 단어**

민사재판, 소장, 복사본, 답변서, 증거, 변론, 판결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해 설**

민사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고 설명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 설명하는 교과서도 지나치게 간략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보다 상세히 민사재판 절차를 설명하였다.

## 33-13. 민사재판의 법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이 열리는 곳을 법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관여하는 사람은 물론 법정의 구조도 다릅니다.

법정의 구조만 보아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법정엔 방청석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들어와서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언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와 소송대리인이 이처럼 판사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에게 공평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내용을 재판에 적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재판을 한다는 점은 법정에서 재판을 말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듣고 조사한 내용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과 그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법정에 스크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법정에는 각종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등 재판 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받으며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소송 진행 방식을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판사와 당사자가 각종 서류를 함께 볼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방식입니다.

### 핵심 단어

법정,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전자소송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따라 법정 구조를 삽화 형식으로 소개하는 것과 소개하지 않는 것이 있고, 소개하는 교과서도 잘못 소개하는 것이 있어서 이를 실물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민사재판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의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 민사재판의 원칙인 공개심리주의, 당사자 평등원칙,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다만, 중학교 단계에서 개념의 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관련 용어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전자소송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소송의 방식과 장점을 소개하였다.

## 33-14. 민사재판부의 유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재판을 방청해 본 학생은 잘 알 텐데, 어떤 법정에서는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어떤 법정에서는 판사 3명이 있지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재판을 담당하는 곳을 재판부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로 구별됩니다. 단독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단독판사라고 하고, 합의재판부의 중앙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재판장, 그 옆에 있는 판사를 배석판사라고 하지요.

어떤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을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지 궁금하지요? 민사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건을 담당하고, 합의재판부는 이를 초과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사재판부의 구성을 알겠죠?

### 핵심 단어

재판부,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단독판사, 재판장, 배석판사, 2억 원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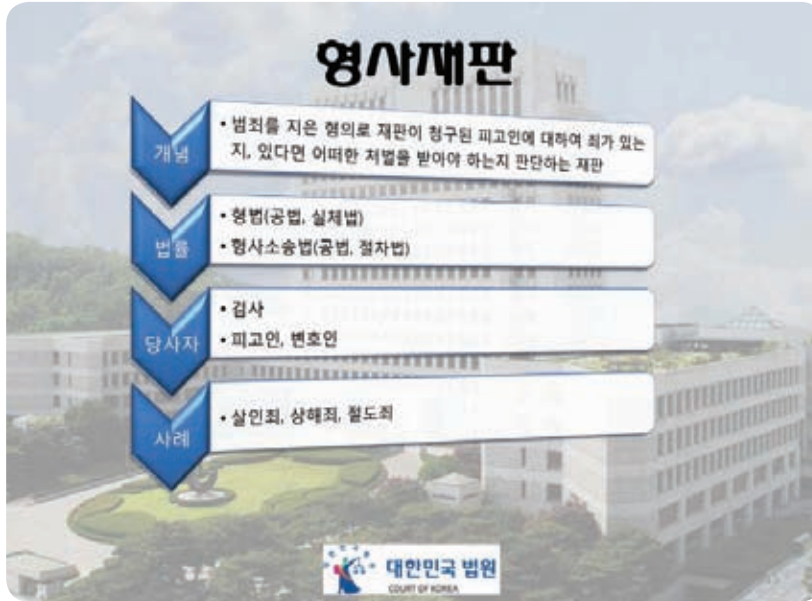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중학교 교과서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대한 설명 없이 상소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합의재판부와 효과적의 구별을 위해 단독판사를 단독재판부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법원을 견학했거나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이 궁금한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 33-15. 형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여러분은 민사재판보다 TV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형사재판이 더 익숙하지요? 형사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범죄를 범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는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아 형사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 참여하여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형사재판의 예는 무척 많지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모두 형사재판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용어를 구별할 수 있겠지요?

(문제)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누구이지요?

원고이지요. 반면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의 상대방은 피고이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에요.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를 도와주는 사람은 소송대리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변호인이지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용어가 다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가끔 TV나 영화에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피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 핵심 단어

형사재판, 범죄, 처벌, 형법, 형사소송법,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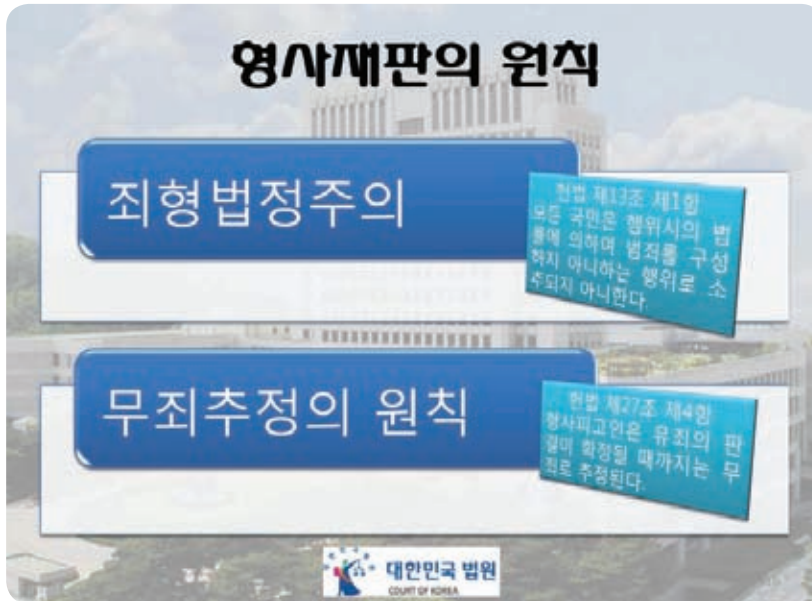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사·피고인·변호인과 같이 형사재판에 관계된 용어는 중학교 과정에서 비로소 나온다. 적용되는 법률로 형법, 형사소송법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중학교 단계에서 법의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관련 용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33-16. 형사재판의 원칙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형사재판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조심스러운 장치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로 인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로서 설정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만약 유죄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무죄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한 원칙들을 세워 둔 이유는 형사재판이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 핵심 단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부 교과서에서 영장주의,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형사절차 내지 형사재판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설명하였다.

## 33-17. 형사재판의 절차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형사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성명 등을 물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뒤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한 범죄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은 죄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데, 이때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되는데 증거에는 서류도 있고 물건도 있으며 증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 후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검사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때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 뒤 피고인과 변호인

은 사건에 관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후 진술까지 끝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그 날 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보도를 볼 때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한 것인지 판결 선고를 한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구형은 형벌 부과에 대한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의 선고입니다. 앞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도 잊지 말고요.

### 핵심 단어

진술 거부, 피고인 확인, 범죄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 죄의 인정 여부를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의견 진술, 구형, 최종 진술, 판결 선고

### 교과서 관련 단위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형사재판 절차는 중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특화활동인 모의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 주제로 선정하였다.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소장’, ‘자백’과 같은 용어는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변경하였다. 구형과 선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잡는 설명을 하였다.

## 33-18. 형사재판부의 유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의 재판부도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있습니다. 단독재판부는 절도, 상해와 같이 상대적으로 형벌이 가벼운 범죄를 담당하고, 합의재판부는 살인, 강도와 같이 형벌이 중한 죄를 담당하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법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의 법정과는 다릅니다. 형사재판의 법정은 중앙에 판사석이 있고 방청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검사석, 오른쪽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습니다.

### 핵심 단어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절도, 상해, 살인, 강도, 판사석, 검사석, 피고인석, 변호인석

 교과서 관련 단위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해 설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분량 조절을 위해 형사법정의 구조도 함께 설명하였다.

## 33-19. 국민참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여러분 혹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민참여재판은 기존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유죄로 평결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의된 것을 참고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만 2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일로 바쁜 가운데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힘든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배심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재판에 참여하면서 법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고,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배심원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땐 나도 당당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세요. 알았죠?

### 핵심 단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형벌 토의

### 교과서 관련 단위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 과정의 모든 교과서가 국민참여재판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33-20. 행정재판과 가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이번에는 행정재판과 가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을 때, 행정청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작용의 시정을 청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청이 적법한 행정을 하도록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재판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재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판,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판 등이 있습니다. 행정재판의 원고는 재판을 청구한 국민, 피고는 재판이 청구된 행정청이 됩니다.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TV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을 재판상 이혼을 다루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상속재산 분할 등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핵심 단어

행정재판,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재판, 가사재판,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재판 상 이혼, 자녀의 양육, 상속재산 분할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교과서에서 행정재판과 가사재판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중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법원, 가정법원에 대한 설명과도 관련되기에 주제로 선정하였다. 가급적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33-21. 소년보호재판

### 발표화면

| 소년보호재판 |                                                            |               |          |
|--------|------------------------------------------------------------|---------------|----------|
| 대상     | 보호처분                                                       |               |          |
| 범죄소년   |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 종류            | 기간 (이하)  |
| 촉법소년   |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감호 위탁         | 6개월      |
| 우범소년   |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수감형형          | 100시간 이내 |
|        |                                                            | 사회봉사형형        | 200시간 이내 |
|        |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                                                            | 장기 보호관찰       | 2년       |
|        |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
|        |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      |
|        |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
|        |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
|        |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
|        |                                                            | 대상 연령 (이상)    | 10세      |
|        |                                                            |               | 12세      |
|        |                                                            |               | 14세      |
|        |                                                            |               | 10세      |
|        |                                                            |               | 10세      |
|        |                                                            |               | 10세      |
|        |                                                            |               | 10세      |
|        |                                                            |               | 10세      |
|        |                                                            |               | 12세      |

### 강의내용[2분]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소녀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지 않을까요?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크게 범죄소년 · 촉법소년 · 우범소년으로 나뉩니다.

소년 재판부에 사건이 들어오면 소년의 범행 · 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등이 고려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소년에게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보호처분 중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보호처분은 말 그대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이기 때문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핵심 단어

소년보호재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보호처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보호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중학생들과도 관련되는 재판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년보호재판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재판절차나 보호처분의 내용이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화면에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 설명은 알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3-22. 학교폭력 1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소년보호재판과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부 삼아 학교폭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화면의 내용을 읽어 보시겠어요?

(문제) 이 중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전부 다 학교폭력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 모두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학생이 있나요? 앞으로는 절대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약속할 수 있지요?

### 핵심 단어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과서 관련 단위

중학교 도덕 1 ‘친구 관계와 도덕’

중학교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중학교 도덕·사회 교과서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중학생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주제로 선정하였다.

## 33-23. 학교폭력 2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학교폭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느 학생이 이것을 읽어보시겠어요?

(문제) 이 중에서 맞는 내용은 어느 것일까요?

이 중에서 맞는 내용은 없어요. 모두 잘못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이 처벌 정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처벌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싸울 때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라고 해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 단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도 그 학생은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가볍게 한 장난이어도 피해학생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뻗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나의 행동이 그 친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해학생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연락해 보세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이런 작은 노력들에 의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 핵심 단어

폭력으로 대응,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 내외, 형사처벌, 촉법소년, 보호처분, 피해학생의 기준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도덕 1 ‘친구 관계와 도덕’

중학교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 해 설

학교폭력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다시 문답 형식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 33-24. 법원

### 발표화면



### 강의내용[10초]

다음은 법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3-25. 법원의 역할

### 발표화면



제3장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

### 강의내용[2분]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살펴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도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는 이러한 의견 충돌이 더 크게,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에 법원이 나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툼이 발생하고, 자칫 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매우 큰 피해가 돌아갈 법한 상황에서 법원은 중재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려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겠지요? 이는 법원이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 핵심 단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 사회질서 유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 사법권의 독립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인권 보장과 헌법’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교과서에서도 법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나 다소 압축적이어서, 이를 풀어서 설명하였다.

## 33-26. 법원의 조직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법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이 있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밑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특수법원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허법원은 특허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재판의 제1심 법원이지만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하면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지요. 특허법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행정

법원은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특허법원과 달리 지방법원급입니다.

### 핵심 단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교과서에서도 법원의 조직도를 제시하면서 법원의 조직을 설명하고 있으나, 대체로 법원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교과서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33-27. 대법원

### 발표화면



제3장

제3장  
중학점에 대한 강의안

### 강의내용[1분 30초]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판결을 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밑의 사진이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장면입니다. 법정도 크고 분위기도 엄숙하지요?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 지금까지는 크게 구별하지 않았지만, 법관과 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요?

법관이 판사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판사가 있는 것이지요.

### 핵심 단어

최고 법원, 대법원장, 13명의 대법관, 대법관 4명, 전원합의체 재판, 법관과 판사의 차이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교과서마다 대법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간략하게 언급한 정도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소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 33-28.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 발표화면



제3장

중학점에 대한 강의

### 강의내용[2분 30초]

고등법원은 민사·형사·가사·행정재판의 제2심 재판을 담당하며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큰 도시들이죠?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만 있습니다.

(문제) 서울에 지방법원이 있을까요?

지방법원이라고 해서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도 5곳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지방법원이란 일단 지역 법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도가 몇 개 있나요? 9개이지요.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도에 하나씩 있는데 경기도에는 의정부와 수원 두 곳에 있으니까 10곳이 되고, 그 외 서울에 5곳, 광역시 중 인천, 부산, 울산에 하나씩 있으니까 18곳이 되지요.

법원이 많은 것 같지요? 법원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의 법원만 있

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려면 불편하겠지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법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법원만 해도 담당하는 지역이 넓어서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시와 군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경우 본원은 대전지방법원이 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우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됩니다.

지방법원에는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제1심과 제2심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고등법원, 제2심 재판,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곳, 합의재판부, 지방법원, 18곳, 지원, 시·군법원, 본원,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제1심과 제2심 재판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지원을 소개하는 교과서와 소개하지 않는 교과서가 있으나 일부 교과서는 이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점, 지원은 심급제도와 관련되는 점, 지원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대해 설명하였고, 시·군법원 소재지의 중학생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법원도 설명하였다. 필요한 경우 학생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을 예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3-29. 심급제도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앞에서 제1심 재판, 제2심 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처럼 판결에 이의를 하여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이의인 항소와 제2심 판결에 대한 이의인 상고로 구분됩니다.

화면을 보면 사건에 따른 상소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제1심 단독 재판부에서 한 판결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서 제2심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심 합의재판부가 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제2심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1심 단독재판부에서 청구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재판한다고 했지요? 그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사건과 합의재판부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는 형사재판과 같습니다. 제1심 단독재판부 사건 중 1억 원 초과, 2억 원 이

하 사건이 항소되면 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이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만약 상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두어 불복 시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한 번의 재판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은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하는 데 돈과 시간이 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제1심 재판에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여러 증거를 검토하여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거나 좀 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낳게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충실히 하고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요?

### 핵심 단어

상소, 항소, 상고, 심급제도, 한 번으로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교과서에서 심급제도와 관련 용어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3심제를 원칙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제1심 재판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서의 내용과 일반적인

설명방식에 따라 형사단독 사건과 1억 원 이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이와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서는 제2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내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서는 이 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 33-30. 판사

### 발표화면



### 강의내용[10초]

이제 강의를 마칠 때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법관과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3-31. 자랑스러운 법관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판사가 되어 좋은 점은 주변에 좋은 선후배·동료 판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법원에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아요. 훌륭한 판사들과 같이 근무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지요. 그런 판사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발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분이십니다.

1887년에 태어난 김병로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침략에 분개하여 의병투쟁에 참가했다가 일본을 이기고 국민을 보호하려면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뿌리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변호사로서 독립투사들의 변호에 나서게 돼요. 동시에 법학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하면서 직접 독립운동을 하고, 다른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는 초대와 제2대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법관의 첫 번째 미덕은 청렴과 강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그만 부탁이나 선물도 받지 않았으며 법관들에게 늘 명예를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제정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김병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 핵심 단어

가인 김병로 선생님, 독립운동, 대법원장, 사법부의 독립,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법교육 교재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다. 인물사적 측면에서 존경할 만한 판사를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법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증진하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 33-32.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발표화면



 강의내용[1분 30초]

판사라는 직업은 큰 권한을 가진 멋있는 직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판사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이죠. 판사가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사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빠른 시간에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 참 어렵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판사들은 모두 높은 공직과 보람을 느끼며 깨끗하게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사람들 간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내가 내린 판결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행동기준이 만들어지거나 옳은 일의 가치를 새로이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뿌듯한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판사가 되려면 법을 알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사고력, 세상을 넓게 보는 능력과 균형감각, 도덕성과 인내심, 힘든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체력까지 많은 자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훌륭한 판사가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중에서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나와서 법원을 빛내길 바랍니다.

### 핵심 단어

권한, 책임, 금지와 보람, 보람과 자부심, 지식과 사고력, 균형감각, 도덕성, 인내심, 관심과 열정

### 교과서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2 ‘일상생활과 법’

중학교 사회 2 ‘헌법과 국가기관’

### 해 설

이 부분은 법교육보다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나, 넓게 보면 진로교육도 법교육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33-33. 감사합니다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이상으로 법원과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법과 법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법원에서는 학생들의 방문과 견학을 환영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재판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을 방문하여 실제 법정의 구조와 재판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 설

학생들이 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하는 강의라면, 법원 방문과 견학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법관 강의안 Ⅲ

제4장

#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이해





## 39-2, 3. 소개합니다, 재판의 종류<sup>8)</sup>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 판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2000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지방법원, ○○지방법원 등을 거쳐 지금은 ○○(지방,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과 재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판사를 직접 만나 본 사람이 있나요? 직접 판사를 보니까 어떤가요? 판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잘생기진(예쁘진) 않아도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를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틈틈이 문제도 내고 답변을 잘한 학생에게는 기념품도 드릴 거예요.

오늘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이나 법원, 재판에 관한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도 무척 많거든요.

(다음 장)

8) 발표화면 슬라이드 순번과의 일치를 위해 39-2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39-1은 제목 부분이다.

재판만 해도 종류가 많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외에도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가사재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재판, 특허·상표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다루는 특허재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재판,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 군인 등이 범한 죄를 다루는 군사재판 등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 갈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민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지요.

오늘 얘기를 잘 듣게 되면 TV나 영화에 나오는 재판장면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고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듣고 의미를 새긴다면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 판사, ○○(지방, 고등)법원, ○○재판, 편안하게, 기념품,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선거재판, 소년보호재판, 군사재판, 사례 중심,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 분쟁 해결, 분쟁 예방, 형사절차

## 해 설

강의의 시작 부분이다. 학생들이 판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 주는 차원에서 재미있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사에 대한 소개는 표준화하기 곤란하여 성명, 학력, 경력, 업무 정도로 분류하였다. 강사에 따라 적절히 내용을 구성하되 발표화면을 편집하여 강사의 사진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의의 시작 단계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으나, 강의 장소가 학교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소개항목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요청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설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재판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보다 쉽게 재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집중을 위해서 실제로 기념품을 보여주면서 이를 준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좋다. 기념품으로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이나 사법발전재단에서 발간한 법교육 교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또는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제작한 기념품 등이 적절하다. 물론 기념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념품에 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면 된다.

## 39-4. 민사재판

### 발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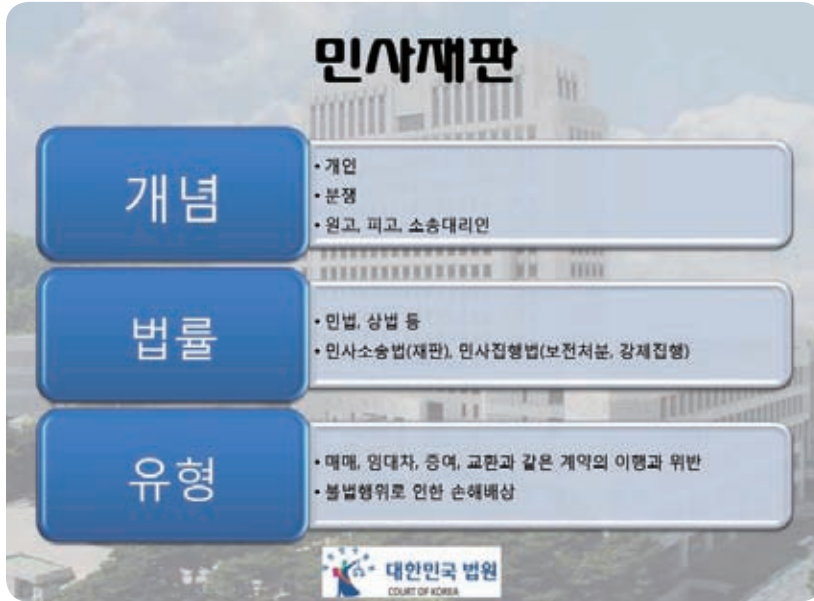


### 강의내용[10초]

먼저 민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9-5. 민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 중에서 **민사재판**은 개인 사이에 발생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은 다들 알지요? 그럼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은 이를 전후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민사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확보해야 하고, 판결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권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앞의 것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지요.

기본적으로 민사재판에는 **민법**, **상법**과 같은 실체법이나 **민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이 적용되지만,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됩니다. 재판을 소송이라고

도 하니까 민사소송법은 당연히 민사재판에 적용되는 법이겠죠?

민사재판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매매, 임대차, 증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민사재판에 해당하지요.

(문제) 민사재판의 사례로 무엇이 있는지 추가할 사람 있나요?

### 핵심 단어

민사재판, 분쟁,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가압류, 보전처분, 강제집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계약, 불법행위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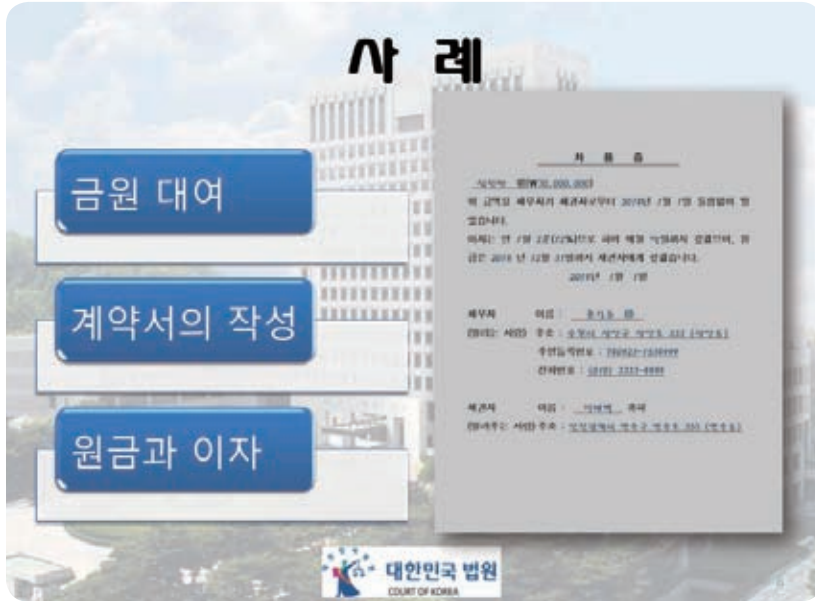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 민사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권리의 구제절차로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강제집행과 함께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가압류, 강제집행이나 매매, 임대차와 같은 개념의 소개가 가능하다.

## 39-6. 사례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그럼 민사재판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홍길동 씨가 이태백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홍길동 씨가 3,000만 원을 빌리기를 원하고 이태백 씨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일치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음식을 주문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요. 엄밀히 보면 그와 같은 활동이 모두 계약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모두가 계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요.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의를 잘 듣다

보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실감할 거예요.

홍길동 씨와 이태백 씨는 계약서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이태백 씨가 홍길동 씨에게 2014년 1월 1일 3,000만 원을 빌려주고 홍길동 씨는 매월 말일에 연 12%의 이자를 갚으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금을 갚는 것으로 했군요. 이때 원금은 빌려주는 금액인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 12%의 이자는 월 1%의 이자니까 월 30만 원이 이자군요. 이처럼 계약서에는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계약의 내용과 계약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 간 홍길동 씨가 2014년 12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을 때 이태백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핵심 단어

계약, 계약서, 차용증, 원금, 채권자, 채무자, 이자, 서명, 도장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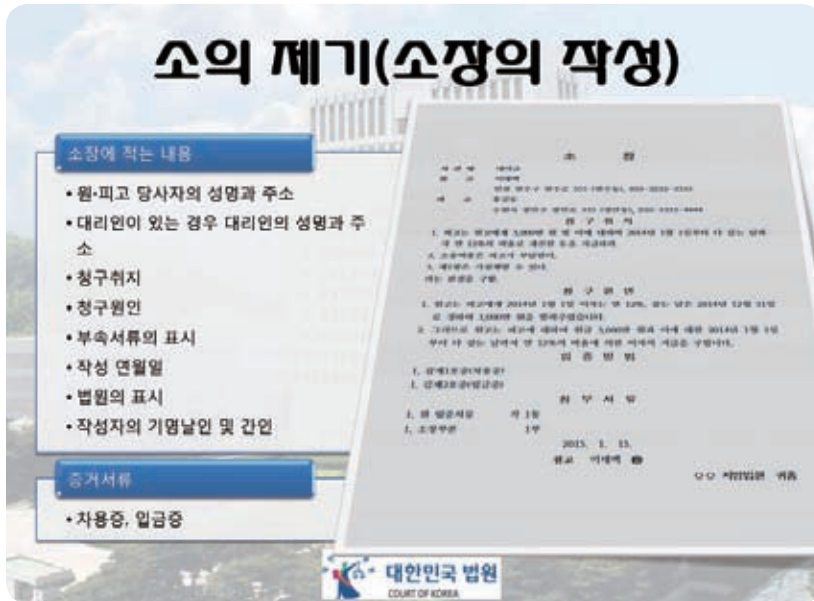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교과서에서 계약의 의미와 성립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금원 대여 사례를 계약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 39-7. 소의 제기(소장의 작성)

### 발표하면



### 강의내용[1분 30초]

물론 이태백 씨는 먼저 홍길동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겠지요. 그래도 홍길동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홍길동 씨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 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속서류,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적고 작성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중요한데 용어는 생소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등을 간결하게 적은 것이고,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를 하는 이유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이태백 씨가 작성한 소장을 보면 청구취지로 원금 3,000만 원과 돈을 빌려준 날인

2014년 1월 1일부터의 이자를 청구했고 청구원인으로서는 홍길동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사실을 적었군요. 그리고 이태백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홍길동 씨와 작성한 차용증과 3,000만 원을 송금한 입금증을 준비했습니다.

(문제) 그런데 소장에는 아직 법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태백 씨가 수원에 사는 홍길동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 핵심 단어

민사재판, 소,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서류, 법원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장의 내용이나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가급적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39-8. 소의 제기(소장 제출 법원)

 발표화면



제4장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안

 강의내용[1분 30초]

우리나라의 어디에 법원이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어떤 법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가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특허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특수법원이지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지방법원도 무척 많은 것 같지요?

법원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의 법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려면 불편하겠지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법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를 자세히 보면 지원이라는 곳도 있지요? 지방법원만 해도 담당하는 지역이 넓기에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시와 군에 시·군법

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경우 본원은 대전지방법원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지역별로 지방법원과 지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은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이태백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홍길동 씨가 살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핵심 단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지원, 시·군법원, 본원, 피고의 주소지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 해 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토지관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법원의 조직도 함께 설명하였다. 지원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고 심급제도와의 관련되며 지원 소재 학생들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설명에 포함하였다.

## 39-9. 민사조정 신청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 즉 재판이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지나친 나머지 가족이나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까지도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란 재판이 아니라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도 하고 있어요.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며,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 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민사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실 이태백 씨는 홍길동 씨와 친구 사이인 관계로 민사조정을 신청할 것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하네요. 재판 외에도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핵심 단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협상, 조정, 중재, 민사조정, 신속한 해결, 비용, 타협과 양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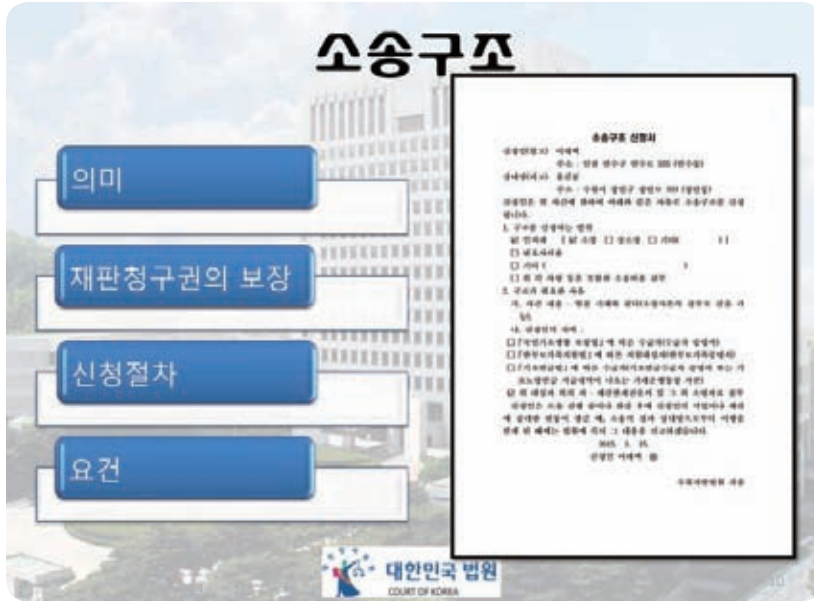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과정에서 간편한 권리구제방법으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과 민사조정제도를 설명하고 있고, 조정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민사조정제도를 설명하였다. 다만, 강의는 기본적으로 민사재판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조정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조정제도의 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39-10. 소송구조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이 분쟁해결방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백 씨가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재판할 돈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 각종 감정료까지 돈이 들거든요.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겠지요?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원고는 물론 피고도 법원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정말로 소송비용을 낼 돈이 없는지와 신청

인이 재판에서 질 상황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재판에서 질 것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 까지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기는 어렵겠지요?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게 되는 것이지요. 화면을 보면 원고인 이태백 씨가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했군요.

### 핵심 단어

재판청구권, 소송구조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교과서에서는 권리구제를 돕는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하고 있을 뿐 소송구조제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법교육 교재에서 소송구조제도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제도는 재판청구권과도 관계되므로 주제로 삼았다. 인지대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부 교과서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 39-11. 재판부의 결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재판을 하는 곳을 재판부라고 하는데, 수원지방법원에 재판부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태백 씨가 소장을 제출했으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져야 할 텐데, 재판부는 이태백 씨가 청구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을 방청해 본 학생은 잘 알 텐데, 어떤 법정에서는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어떤 법정에는 판사 3명이 있지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재판부는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로 구별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2억 원 이하면 단독재판부에서,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단독재판부 사건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태백 씨는 3,000만 원을 청구했으니 일반 단독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번호도 부여되는데, 이태백 씨가 2015년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을 제출했으니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45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가단’이라는 것은 일반 단독재판부 사건을 의미하고 345번은 접수순서에 따른 번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핵심 단어

재판부,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소액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45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물관할에 대한 설명 없이 심급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합의재판부와 명확한 구별을 위해 단독판사를 단독재판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 39-12. 민사재판의 절차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이태백 씨가 소장을 제출했고,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도 정해졌으니 이제 민사재판이 진행되겠지요.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피고인 홍길동 씨에게 그 복사본을 보냅니다. 피고에게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정하면 떠오르는 재판장면이 바로 변론이지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조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이

내에 판결을 선고하며 그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화면은 민사재판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인데, 실제로는 변론이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단어

소장, 복사본, 답변서, 증거, 변론, 판결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민사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고 설명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 설명하는 교과서도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한 정도여서, 이를 보충하는 설명을 하였다.

## 39-13. 답변서의 제출

### 발표하면



### 강의내용[1분 30초]

소장을 송달받은 홍길동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홍길동 씨가 이태백 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홍길동 씨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태백 씨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아니까 당연히 법원도 알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하는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홍길동 씨가 **두 가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를 상정해 볼까요?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답변서를 하나만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답변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각각, 즉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답변서 1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답변서 2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답변서 2에서는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수증과 입금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미 법원, 재판부, 사건번호가 정해진 관계로 답변서에서 이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 핵심 단어

답변서, 판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답변서, 영수증, 입금증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교과서에 답변서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실제 재판에서는 답변서를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9-14. 민사재판의 법정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이태백 씨가 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 홍길동 씨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법정의 구조만 보아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법정에는 방청석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들어와서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공개심리주의’라고 하는데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언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와 소송대리인이 화면처럼 판사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에게 공평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 평등원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내용을 재판에 적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재판을 한다는 것은 ‘구술심리주의’와 ‘직접주의’를 뜻합니다. ‘구술심리주의’는 단지 서면을 제출해서는 안되고 법정에서 그 주장을 말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직접주의’는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듣고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구술심리주의와 직접주의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과 그 정당성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 핵심 단어

법정,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공개심리주의, 당사자 평등원칙,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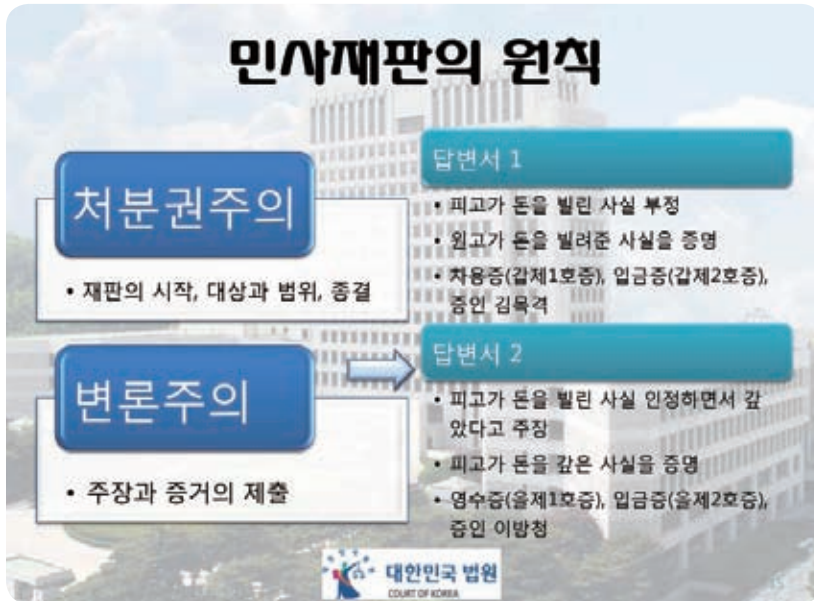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법정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민사재판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 39-15. 민사재판의 원칙

### 발표화면



제4장

민사재판에 관한 강의안

### 강의내용[3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깐 잘 들으세요. 민사재판의 원칙에는 좀 전에 설명한 것 외에도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권주의란 재판의 시작, 재판의 대상과 범위, 재판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판단해 달라고 한 범위까지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태백 씨가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먼저 나서서 재판을 할 수는 없고, 이태백 씨가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은 문제들까지 법원이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변론주의는 원칙적으로 주장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가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주체가 원고와 피고이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바

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다 알아서 사건을 처리해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 줄 것이라고 마냥 기대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겠지요?

변론주의는 원고든 피고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답변서 1에서는 피고인 홍길동 씨가 원고인 이태백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이때 돈을 빌려준 사실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원고인 이태백 씨에게 유리한 내용이지요? 이때에는 원고인 이태백 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태백 씨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과 3,000만 원을 송금한 입금증, 그리고 이태백 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목격 씨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김목격 씨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같이 있던 사람이예요.

반면에 답변서 2에서는 피고인 홍길동 씨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았다고 했어요. 돈을 빌린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니까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돈을 갚은 사실은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이니까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에서는 홍길동 씨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과 입금증, 그리고 홍길동 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방청 씨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영수증은 홍길동 씨가 이태백 씨에게 3,000만 원을 갚을 때 이태백 씨가 작성한 것이고 입금증은 홍길동 씨가 매달 이자를 송금한 것이며, 이방청 씨는 이태백 씨가 영수증을 작성할 때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갑호증이라고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을호증이라고 하며, 제출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 핵심 단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재판의 시작, 재판의 대상과 범위, 재판의 종결, 주도권, 주장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차용증, 입금증, 김목격, 영수증, 이방청, 갑호증, 을호증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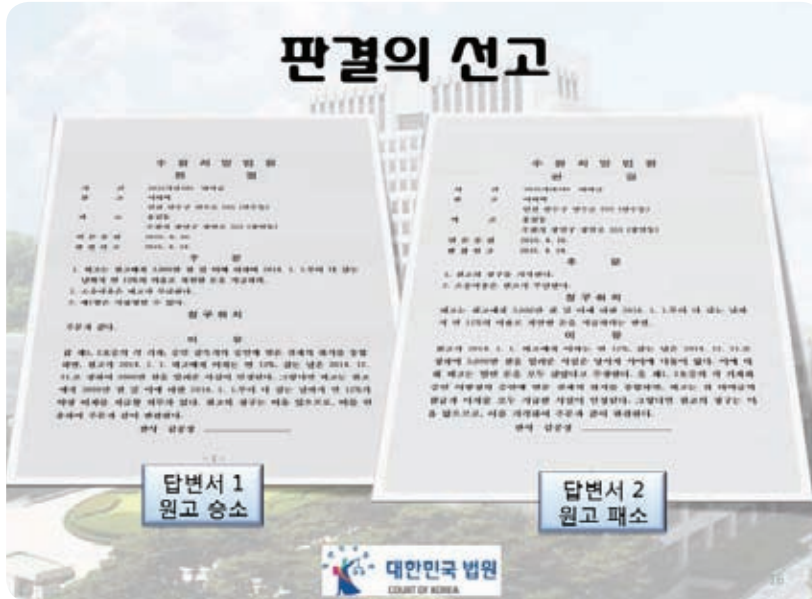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소개하는 법교육 교재가 있고 특히 변론주의는 민사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그로 인해 재판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분량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처분권주의는 사례와 크게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다.

## 39-16. 판결의 선고

### 발표화면



### 강의내용[3분]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었는지 볼까요? 우선 판결문을 보는 방법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판결문을 보면 법원, 당사자인 이태백 씨와 홍길동 씨, 변론을 종결한 날짜와 판결을 선고한 날짜, 그리고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중에서 주문은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에게 의무를 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에서 밝힌 청구취지를 그대로 적는데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주문과 청구취지가 같으니 ‘주문과 같다.’고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판결문이 하나입니다. 오늘 두 가지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은 재판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에요. 실제 판결문은 이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오늘 제시하는 판결문과 크게 다르지 않

아요.

피고인 홍길동 씨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답변서 1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인 이태백 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에 관한 증명을 잘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답변서 2를 제출한 사안에서, 홍길동 씨가 돈을 갚은 사실에 관한 증명을 잘해서 원고인 이태백 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답변서 1의 사안에서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패소하겠지요? 그리고 답변서 2의 사안에서도 피고가 돈을 갚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고가 패소하겠지요? 심지어 피고가 돈을 갚았음에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어떻게 주장과 증명을 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민사재판에서 원고만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고든 피고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잘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거래를 할 때 차용증, 계약서와 같은 자료를 꼭 작성해야 하고 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계약서도 그냥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거자료를 잘 구비해 두고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분쟁이 예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 핵심 단어

판결문, 법원,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날짜, 판결을 선고한 날짜,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사, 주장과 증명, 차용증, 계약서, 입금증, 명확하게 작성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의 특화활동이나 부록에서 판결문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 판결문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판결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면을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사재판의 특성과 함께 계약서 등 법률서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39-17. 상소제도

### 발표화면



### 강의내용[3분]

이태백 씨나 홍길동 씨가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에 대한 이의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처럼 판결에 이의를 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이의인 항소와 제2심 판결에 대한 이의인 상고로 구분됩니다.

화면을 보면 사건에 따른 상소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제1심 단독재판부에서 청구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건을 담당한다고 했지요? 지방법원의 제1심 단독재판부가 판결한 사건 중 청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재판부에서, 청구금액이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제2심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합의재판부가 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제2심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태백 씨나 홍길동 씨는 청구금액이 1억 원 이하로서 단독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으니까, 만약 항소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문제) 이태백 씨나 홍길동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원 간에 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두어 불복 시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하는 데 돈과 시간이 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제1심 재판에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여러 증거를 검토하여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민사재판의 결과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주장과 증명을 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제1심 재판에 대해 이의를 하여 재판을 연장한 뒤 다시 주장과 증명을 하기보다는 제1심 재판에서 주장과 증명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충실히 하고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요?

### 핵심 단어

상소, 항소, 상고, 심급제도, 한 번으로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심급제도를 설명하면서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와 같은 전문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여 학생들이 3심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보다는 제1심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억 원 이하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이와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서는 제2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내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서는 이 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 39-18. 전자소송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민사재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좋은 재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이나 증거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려면 시간도 들고 생업에도 지장이 있겠지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 등 각종 재판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받으며,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소송 진행 방식을 말합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바로 전자소송 화면인데, 소장이나 답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소송은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볼 수 있어 편리하며, 종이 없는 소송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무척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각종 증거들이나 소송기록을 법정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판사와 당사자들이 함께 볼 수 있고, 첨단 멀티미디어 파일을 이용하여 변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 편리한 변론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소송 방식에 비해 여러 장점이 많은 전자소송 방식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처럼 인터넷을 활용하면 재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관련 판결을 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사실 판결을 보는 것은 법과 재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와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실제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차용금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판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판결이 구성되는지, 판결에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는지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 핵심 단어

전자소송, 전자문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장점, 효율적이면서 편리한 변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 각 법원 홈페이지, 검색어

### 교과서 관련 단위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고등학교 법과 정치 ‘개인 생활과 법’

### 해 설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특화코너를 통해 전자소송을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 민사재판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강의를 들은 고등학생이라면 전자소송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소송의 활성화도 법교육 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 검색은 별도의 주제로 설정하였다가 분량 문제로 전자소송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 39-19. 형사재판

### 발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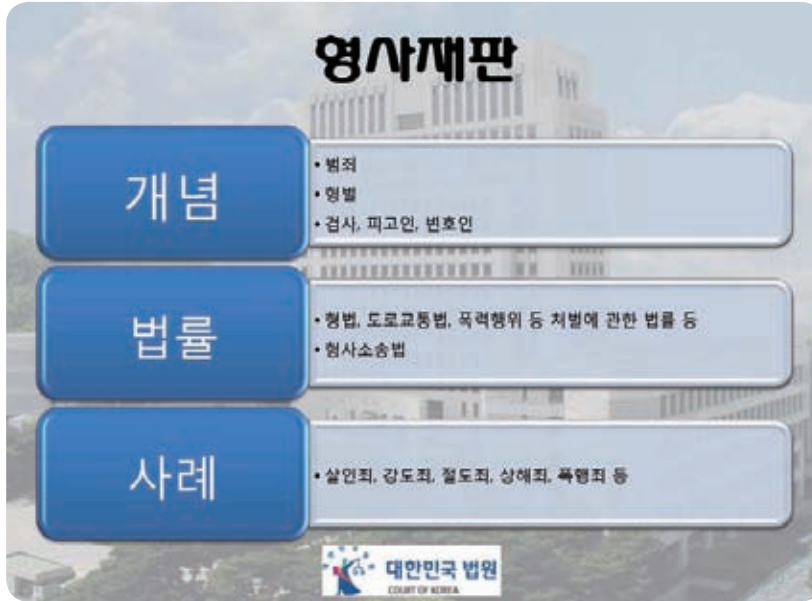


### 강의내용[10초]

다음에는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9-20. 형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여러분은 민사재판보다 TV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형사재판이 더 익숙하지요? 형사재판은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받아 재판이 청구된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아 형사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한 뒤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합니다. 피고인을 도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과 형사절차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에는 형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양

한 법률이 있고 형사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형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규정들은 모두 실질적 의미에서 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까지 다양한 사건을 취급합니다.

### 핵심 단어

형사재판,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사, 형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살인죄, 절도죄

### 교과서 관련 단위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형사재판 관련 용어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적용 법률과 사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9-21. 형사절차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형사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을 전후한 형사절차를 알 필요가 있어요. 범죄와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어야 형사재판이 가능하겠지요? 아무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을 청구하려면 그 전에 범죄와 범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요.

이처럼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담당하고 2차적으로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가 담당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것과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과 같이 신고에 의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혹시 뉴스에서 범죄의 인지라는 말을 들어 보았나요? 범죄 인지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범죄의 내용과 수사절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어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용의자일 뿐이죠.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는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어도 여러 참작할 점이 있으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혼동하기 쉬운데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거나 형사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수형자라고 합니다.

### 핵심 단어

형사절차, 수사, 경찰, 검사, 수사의 단서, 고소, 인지, 피의자, 용의자, 공소를 제기, 기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기소를 유예, 피고인, 수형자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수사를 포함한 형사절차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피의자’, ‘피고인’과 같이 혼동하기 쉬운 용어의 구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39-22. 형사절차의 원칙

### 발표화면

# 형사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 헌법 제12조 제1항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무죄추정의 원리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강의내용[2분 30초]

형사절차는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형사절차에서는 조심스러운 장치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원칙들은 예전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독창적으로 생각해 낸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개선된 것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원칙들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깊게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는 사회에 사는 것을 고마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적법절차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는 형사절차가 적법하면서도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않고 체포·구속과 같은 처분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적법절차

의 원리는 형사절차 전편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로 인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로서 설정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죄추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리는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만약 유죄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무죄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한 원칙들을 세워 둔 것은, 형사재판이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각 원칙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단어

적법절차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리, 사례를 중심

### 교과서 관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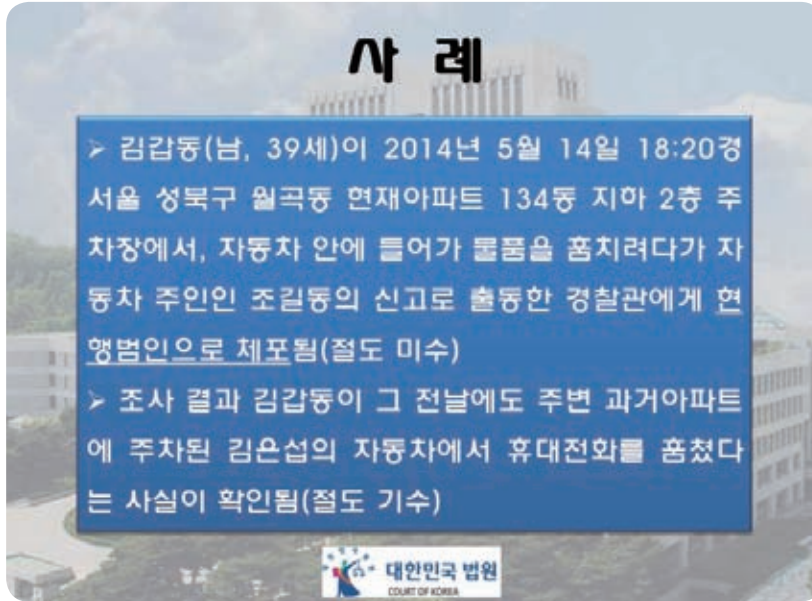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리를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 39-23. 사례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형사재판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에요. 물론 사람 이름과 장소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2014년 5월 14일 저녁 6시 20분경에 서울 성북구 월곡동 현재 아파트 134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가 자동차 주인인 조길동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김갑동 씨를 조사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이는 김갑동 씨가 그 전날 주변의 과거아파트에 주차된 김은섭 씨의 자동차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형사절차 원칙이 문제되는데요, 우선 김갑동 씨가 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휴대전화를 훔친 것은 절도죄이겠지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된 것은 절도미수라고 해요. 미수라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는 했지만, 의

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의도한 대로 범죄가 성립한 것은 기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절도미수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42조에서 절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 만약 절도미수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당연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해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갑동 씨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안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하나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형벌법규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들어간 행위가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주거나 선박, 항공기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예요.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알겠죠?

그런데 김갑동 씨는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군요. 그러면 현행범인 체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 핵심 단어

사례, 현행범인으로 체포, 절도미수, 죄형법정주의, 주거침입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죄형법정주의를 소개하면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염소를 양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고, 간략하기는 하지만 형법총칙상의 미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형사절차 원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영장주의의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사례를 제시해야 하나, 그와 같은 사례를 단순하게 설정하기 어려워 현행법인 체포 사례를 구성하였다.

## 39-24. 체포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30초]

신문이나 방송에서 체포란 말을 많이 들어 보았지요? 체포란 수사절차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체포를 하면 장기간 구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포는 최대 48시간 동안만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세 가지가 있어요.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것인데, 긴급체포는 무거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인이란 김갑동 씨처럼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리와 관련하여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체포와 같은 강제처분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입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는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요.

### 핵심 단어

체포, 단기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무거운 범죄, 긴급한 경우, 현행범인, 무죄추정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정도이다. 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9-25. 피의자의 구속

### 발표화면



제4장

근대형법에 의한 강의를

### 강의내용[2분 30초]

김갑동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김갑동 씨가 아직은 피의자니까 여기서는 피의자의 구속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은 김갑동 씨와 같이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구속은 사전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만 인정되는 점에서 영장 없는 체포도 인정되는 체포와 구별됩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면 그에 대해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피의자가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김갑동 씨와 같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김갑동 씨는 그대로 석방됩니다. 체

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먼저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법원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이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가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심문이라는 것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피의자의 대답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서류만 보지 않고 피의자를 만나 구속사유가 충족되는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과 입장은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속을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체포 피의자든 미체포 피의자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됩니다. 먼저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체포와 마찬가지로 구속에는 적법절차의 원리와 무죄추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이므로 무죄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유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갑동 씨는 범행현장에서 발각되는 등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 핵심 단어

구속, 피의자의 구속,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 경찰 신청, 검사 청구, 판사가 발부 여부 결정, 48시간 이내, 석방, 구인영장, 영장실질심사, 엄격한 요건, 적법절차의 원리, 무죄추정의 원리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구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 편의를 위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구인영장’이라고 하였다.

## 39-26.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30초]

이번에는 체포·구속된 김갑동 씨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하나로 피의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갑동 씨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하지요.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진실 발견이나 정의의 실현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절차에서 김갑동 씨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체포나 구속을 하면서 김갑동 씨에게는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

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문제) 이를 무슨 원칙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지요.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의자로서 최소한 자신이 왜 체포되고 구속되는지 알아야 그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김갑동 씨의 가족 등에게는 체포·구속의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어떤 사람이 체포되어 갑자기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겠지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은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피의자를 만나 보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갑동 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김갑동 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법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갑동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갑동 씨는 변호인이나 가족 등 일정한 사람과 만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김갑동 씨가 체포나 구속을 당하면서 체포·구속의 이유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 체포·구속이겠지요? 이런 경우에 김갑동 씨는 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 핵심 단어

기본권, 적법절차의 원리,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고지, 미란다 원칙,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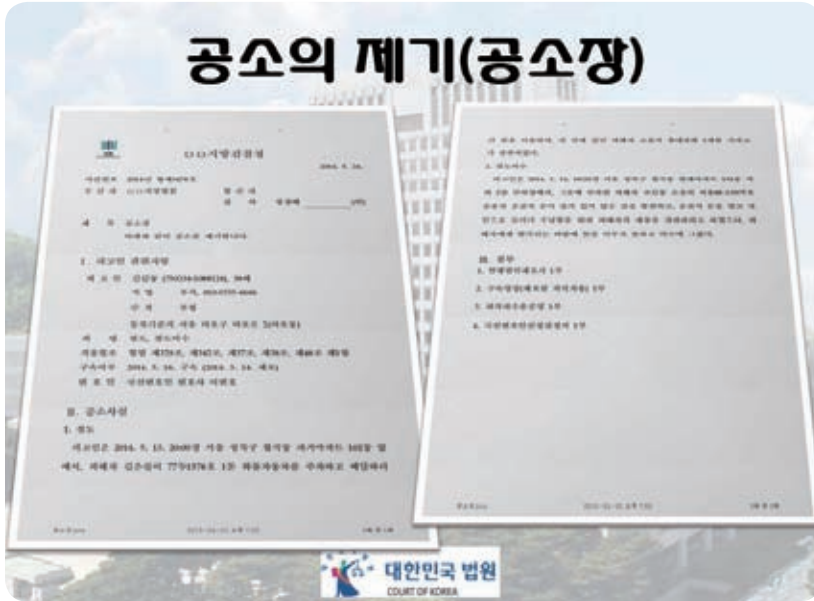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연결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피의자의 권리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 39-27. 공소의 제기(공소장)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김갑동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되고 형사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고 했지요?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갑동 씨의 주거가 부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김갑동 씨의 죄명은 절도와 절도미수이고 그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329조와 제342조군요. 그리고 김갑동 씨는 2014년 5월 14일에 체포되어 2014년 5월 16일에 구속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공소사실 곧 재판의 대상은 김갑동 씨가 2014년 5월 13일에 피해자 김은섭의 자동차에서 휴대전화 1개를 훔쳤다는 것과 다음 날인 2014년 5월 14일에 피해자 조길동의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의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 첨부

부란에 보니 김갑동 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구속영장,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국선변호인은 김갑동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법원에서 선정해 주었지요? 국선변호인으로 이변호 변호사가 선정되었군요.

### 핵심 단어

공소장, 죄명, 법률조항, 공소사실,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 변호인선임서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는 공소장 앞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있으나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까지 예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쉽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으나 형사판결문을 이해하려면 공소장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 39-28. 국선변호인 제도

### 발표화면

# 국선변호인 제도

### 법원 직권

-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일 때 등

### 피고인의 신청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법원  
COURT OF KOREA

### 강의내용[1분]

김갑동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국선변호인으로 이변호 변호사가 선정되었지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변호인은 개인이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형편 등으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형사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적법절차의 원리나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김갑동 씨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미 김갑동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것이지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이고, 피고인이 빈

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단어

국선변호인 제도, 국가의 비용,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의 청구, 법원 직권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나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에 반해 많은 법교육 교재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필요성, 헌법과의 관련성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9-29. 형사재판부의 유형

### 발표하면



### 강의내용[1분 30초]

김갑동 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니까 재판부가 결정되어야 하겠지요?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도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가 결정되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형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형법을 보면 각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징역형은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몇 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단기, 몇 년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 장기입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기준으로 단기가 그 이상인 범죄는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고, 그 외의 범죄는 단독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갑동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기가 징역 1년 미만이니까 김갑동 피고인은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강도죄의 경우에는 단기가 징역 1년 이상이니까 합의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법정이 나와 있는데,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법정은 법대에 판사가 몇 명 있는지만 다르고 구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보면 중앙에 판사가 앉는 법대와 증인석이 있고 그 사이에 재판부 구성원인 실무관과 참여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검사의 자리가 있고 오른쪽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리가 있어요. 형사재판도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 핵심 단어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범죄의 형벌을 기준, 단기, 장기, 징역 1년, 절도죄, 강도죄, 공개된 법정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교과서에서 형사재판부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상소제도와도 관련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그다지 소개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분량 문제로 형사재판 법정의 구조도 함께 설명하였다.

## 39-30. 형사재판의 절차

### 발표화면



### 강의내용[3분 30초]

그러면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김갑동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전해 줍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지 알고 그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을 적은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그 후 실제 재판에서는 먼저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성명 등을 물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피고인 대신 재판을 받거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판을 받으면 큰일 나겠지요? 그 뒤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되는데 증거에는 서류도 있고 물건도 있으며 증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 김갑동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확실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갑동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인 절도와 절도미수 모두 자백하였어요. 김갑동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백을 했어도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김갑동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아무 증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증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 후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검사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때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에 관해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경우 최후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최후 진술까지 끝나면 그 날 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보도를 볼 때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한 것인지 판결 선

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구형은 형벌 부과에 대한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의 선고입니다. 앞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도 잊지 말고요.

### 핵심 단어

공소장, 의견서, 진술 거부 안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 자백, 증거조사,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엄격한 요건, 피고인 신문, 의견 진술, 구형, 최후 진술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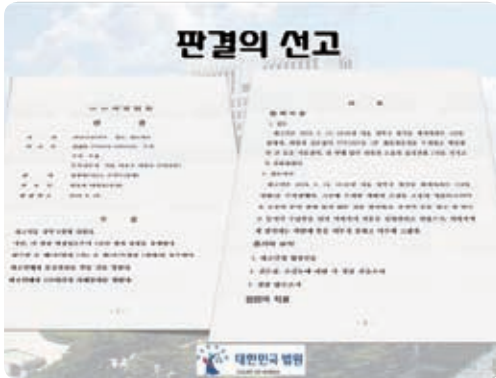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일부 교과서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절차를 요약한 정도여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것보다는 각 단계에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9-31, 32. 판결의 선고

### 발표화면



### 강의내용[5분]

이렇게 해서 김갑동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인적 사항,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일이 표시되어 있지요? 변호인으로는 국선 변호인인 이변호 변호사가 표시되어 있네요.

민사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형사판결문도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은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유는 그 주문에 대한 근거를 나타냅니다. 주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표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무죄라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표시합니다.

이유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과 양형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김갑동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대로 2014년 5월 13일의 절도와 그 다음 날의 절도미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의 요지는 김갑동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증거를 적은 것입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김갑동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안 된다고 했지요? 김갑동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은섭·조길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 수사단

계에서 피해자인 김은섭, 조길동 씨에 대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법령의 적용은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등을 표시한 것이에요. 범죄사실 제1항은 절도로서 그에 대해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9조가 표시되어 있고, 범죄사실 제2항은 절도미수로서 그에 대해 절도미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42조, 제329조가 표시되어 있지요?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의 징역형 선택이라는 것은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형벌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금고·구류,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벌금·과료·몰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이렇게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김갑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의 다른 형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김갑동 피고인은 절도미수도 유죄로 인정되어 실제로는 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척 범위가 넓고 사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을 정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는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김갑동 피고인의 죄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경우 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가 권고되는군요. 범위가 많이 좁혀졌지요?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 장으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김공정 판사는 김갑동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6월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보니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를 집행유예

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특별한 일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지요.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져 피고인은 바로 석방됩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도 엄연히 유죄의 판결이에요. 피고인이 무죄라서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잘못을 하면 유예된 징역형을 집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문을 보니까 중 제2호 열쇠 1개와 중 제3호 목장갑 1결레를 몰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는 김갑동 피고인이 절도와 절도미수를 하면서 사용한 것인데, 이처럼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갑동 피고인에게에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지요? 이 중에서 보호관찰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갑동 피고인이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소라고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항소, 제2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상고라고 하지요. 상소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법원의 단독재판부에서 한 판결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서 제2심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재판부가 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제2심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만약 김갑동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 핵심 단어

판결문, 사건번호, 피고인의 인적 사항,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일, 주문, 이유,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자백, 김은섭·조길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죄형법정주의, 9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 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 징역 6월, 집행유예, 몰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상소, 항소, 상고, 판결의 확정

### 교과서 관련 단위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형의 종류나 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압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분량 문제로 몰수만을 설명하였다. 상소제도까지 설명하여 분량이 많으므로 실제 강의에서는 적절한 정리와 선택이 필요하다.

## 39-33. 국민참여재판

### 발표화면



### 강의내용[1분]

여러분 혹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민참여재판은 기존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유죄로 평결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의된 것을 참고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 ‘국민에 의한 사법’으로 나아가는 제도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법원의 독립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반 형사법정과는 달리 국민참여재판 법정에는 배심원석이 따로 있는데, 사진과 같이 배심원석은 재판장과 검사 사이에 위치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단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형벌 토의, 투명성, 신뢰성, 배심원석, 만 20세 이상

### 교과서 관련 단위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가 본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39-34.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국민참여재판은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 형사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먼저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은 재판절차 즉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때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내용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후 배심원들은 평의실에 모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의 설명에 기초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의하는 평의와 판단하는 평결을 한 뒤 이를 집계한 평결서를 재

판부에 전달하며,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벌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배심원의 평결내용과 형벌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 일로 바쁜 가운데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힘든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배심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재판에 참여하면서 법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고,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어느 날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땐 나도 당당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세요. 알았죠?

#### 핵심 단어

합의재판부, 배심원을 선정, 공판절차, 평의, 평결, 형벌에 대하여 토의, 참여

#### 교과서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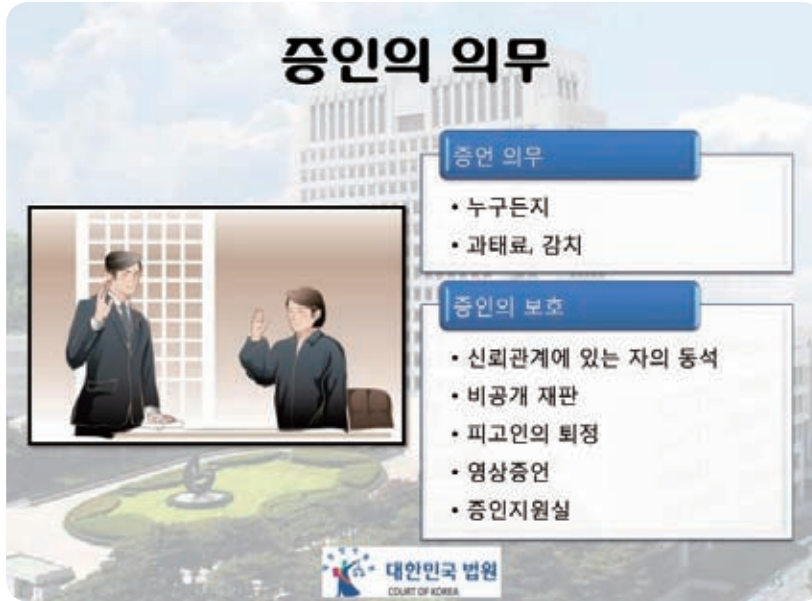
고등학교 법과 정치 ‘사회생활과 법’

#### 해 설

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39-35. 증인의 의무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배심원 외에도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재판에서 자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외의 제3자를 말하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모두 해당됩니다. 법정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건과 관련되는 한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증인의 증언은 물질적인 증거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증언은 무척 중요합니다. 증언 하나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에 이끌려서 허위로 증언을 하면 안 되겠죠?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 그 증인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려야 하고 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에서는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인 증인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 증언을 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기 곤란한 증인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증언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증인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그림에서 여자와 남자 중 누가 증인일까요?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오른손을 들고 있어서 애매한데, 여자가 증인이고 남자는 법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법원경위로 보입니다.

### 핵심 단어

증인, 선서, 누구든지, 과태료, 허위 증언, 신뢰관계에 있는 자, 재판의 비공개, 피고인의 퇴정,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 증인지원실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 해 설

증인이나 증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는 없고, 그동안 증인이 무엇인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없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사법참여에서 증인은 배심원만큼이나 중요하고 법교육에서도 이러한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증언의 중요성, 증인의 의무, 증인의 보호 등을 설명하였다.

## 39-36. 판사의 길

### 발표화면



### 강의내용[10초]

마지막으로 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39-37.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

### 발표화면



### 강의내용[2분]

판사라는 직업은 큰 권한을 가진 멋있는 직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판사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이죠. 판사가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사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빠른 시간에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 참 어렵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판사의 업무량은 무척 많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1, 2회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무실에서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을 하게 되는데, 한가로울 틈이 없이 일주일이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판사들은 모두 높은 공직과 보람을 느끼며 깨끗하게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사람들 간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

에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뿌듯한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판사가 되려면 법을 알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사고력, 세상을 넓게 보는 능력과 균형감각, 도덕성과 인내심, 힘든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체력까지 많은 자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훌륭한 판사가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중에서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나와서 법원을 빛내길 바랍니다.

### 핵심 단어

권한, 책임, 금지와 보람, 보람과 자부심, 지식과 사고력, 균형감각, 도덕성, 인내심, 관심과 열정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 해 설

이 부분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진로교육도 넓게 보면 법교육에 포함될 수 있고, 판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판사의 업무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 역시 법교육에 해당될 수 있다.

## 39-38. 판사가 되는 방법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과거보다 판사가 되는 길은 무척 길고 어려워졌습니다.

대학과정을 마친 뒤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대학에서의 전공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법률 관련 사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10년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득하게 느껴지고 판사가 되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꿈과 열정을 갖고 하루하루 알차게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핵심 단어

대학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변호사 시험, 10년간의 법조 경력

### 교과서 관련 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헌법의 기본 원리'

### 해 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대학에서의 전공은 무관하므로, 대학 입학이 결정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판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도 무방하다. 판사가 되는 과정이 길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렵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9-39. 감사합니다

### 발표화면



### 강의내용[30초]

이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법과 법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법원에서는 학생들의 방문과 견학을 환영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법원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을 방문하여 실제 법정의 구조와 재판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 설

학생들이 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하는 강의라면, 법원 방문과 견학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교육부, 초등학교 도덕 3,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3-1,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3-2,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도덕 4,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4-1,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4-2,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도덕 5,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5-1,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5-2,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도덕 6,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6-1,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 6-2, 천재교육 (2014).
- ———,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6-2, 천재교육 (2014).
- 변순용 외 공저, 중학교 도덕 1, 천재교육 (2014).
- 조영달 외 공저, 중학교 사회 1, 미래엔 (2014).
- 변순용 외 공저, 중학교 도덕 2, 천재교육 (2014).
- 김영순 외 공저, 중학교 사회 2, 두산동아 (2014).
- 김창환 외 공저, 중학교 사회 2, 좋은책 신사고 (2014).
- 류재명 외 공저, 중학교 사회 2, 천재교과서 (2014).
- 이진석 외 공저, 중학교 사회 2, 지학사 (2014).
- 조영달 외 공저, 중학교 사회 2, 미래엔 (2014).
- 최성길 외 공저, 중학교 사회 2, 비상교육 (2014).
- 김영순 외 공저, 중학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 (2014).
- 조영달 외 공저, 중학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 미래엔 (2013).
- 김왕근 외 공저,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2014).
- 손병로 외 공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금성출판사 (2014).
- 설동훈 외 공저,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14).
- 이진석 외 공저,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2014).
- 김왕근 외 공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14).
- 손병로 외 공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2014).

## 법교육 교재

-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 (2012).
- —————,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4 (2014).
- 사법발전재단,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1~4 (2009).
- 대법원 견학 교재(파일형태).
- 대법원 출장 강연 교재 - 법원, 학교에 가다(파일형태).
-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찾아가는 법교육’ 발표자료, 대구지방법원의 ‘법교육을 위한 매뉴얼’ (파일형태), 부산지방법원의 ‘부산법률문화학교’ 발표자료, ‘재판과 법률가 이야기’ 발표자료 등 사법연수원과 각급 법원의 강의 관련 자료.

## 웹사이트 자료<sup>9)</sup>

-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
- 대법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ids/index.html>>.
-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 스쿨로, <<http://schoolaw.lawinfo.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포털,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

## 사진 출처<sup>10)</sup>

## 초등학생용 강의안

- 32-2(바탕화면) -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none>>.
- 32-3(대법원 청사) -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building/overview/index.html>>.

9) 2015. 1. 9. 기준.

10) 2015. 1. 9. 기준임. 자체 촬영하거나 각급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 중복되는 사진은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음.

- 32-3(전원합의체 재판)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photos/pb.306556462705053.-2207520000.1426761144./851736624853698/?type=3&theater>>.
- 32-4(사법부 CI)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32-5(서양 정의의 여신상)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1680\\_blk\\_19329\\_zoom.pn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1680_blk_19329_zoom.png)>.
- 32-5(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 - 대법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37068368](http://blog.naver.com/law_zzang/150037068368)>.
- 32-6(원판) -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none>>.
- 32-6(오른편) -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none>>.
- 32-8(판사) - 대법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
- 32-11(국회의사당) - 국회, <[http://www.assembly.go.kr/assm/assembly/assdata/assdata03/bbs/bbsView.do?bbs\\_seq\\_n=2&bbs\\_cd\\_n=46&currentPage=0&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http://www.assembly.go.kr/assm/assembly/assdata/assdata03/bbs/bbsView.do?bbs_seq_n=2&bbs_cd_n=46&currentPage=0&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
- 32-11(정부종합청사)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http://www.chungsa.go.kr/chungsa/frt/sub/a02/b01/chungsaInfo/screen.do;jsessionid=15F90C4FFF86793A1A1ECE7ABEEF91F8.chungsa?depths1=1&menu=1&smenu=1>>.
- 32-17(법망치) - <<http://pixabay.com>>.
- 32-24(저작물 분류) - 대법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220045757257&from=postView](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220045757257&from=postView)>.
- 32-28(가인 김병로 선생)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photos\\_stream?ref=page\\_internal#!/scourtkorea/photos/pb.306556462705053.-2207520000.1418123873./925391724154854/?type=3&theater](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photos_stream?ref=page_internal#!/scourtkorea/photos/pb.306556462705053.-2207520000.1418123873./925391724154854/?type=3&theater)>.
- 32-29(법원전시관) -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building/exhibition/form/index.html>>.
- 32-30(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www://scourt.go.kr/kids/index.html](http://www.scourt.go.kr/kids/index.html)>.
- 32-32(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photos\\_stream?ref=page\\_internal#!/scourtkorea/photos/pb.306556462705053.-2207520000.1418123644./949246518436041/?type=3&theater](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photos_stream?ref=page_internal#!/scourtkorea/photos/pb.306556462705053.-2207520000.1418123644./949246518436041/?type=3&theater)>.

### ■ 중학생용 강의안

- 33-20(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http://sladmin.scourt.go.kr/jibubmgr/building/new/BuildingList.work>>.
- 33-27(전원합의체 재판)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photos/pb.306556462705053.-2207520000.1425718969./851736978186996/?type=3&theater>>.

### ■ 고등학생용 강의안

- 39-8(법원 조직도) -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region/organization/regionOrgan.jsp>>.
- 39-18(전자소송 화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q=AC1049DAAD20025F0183F9BA6247CA672EFD206E4DA1CE>>.
- 39-34(국민참여재판 흐름도)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 39-35(증인선서) - 대법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174906317](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174906317)>.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

2015년 5월 15일 인쇄

2015년 5월 22일 발행

발행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50

인쇄처 (주)흥디자인

TEL 02-464-5167

---

〈비매품〉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86491-15-7 (95360) (PDF)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